| 2022.7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정책방향

고용노동부

들어가며

▣ 규모별 건설현장 및 사망사고

	120억원 이상	50~120억원	1~50억원	1억원 미만
현장 수 (연간, 추정)	약 1만개소	약 2만개소	약 30만개소	100만개소 이상
사고사망자 (21년, 조사기준)	88	31	134	105
사고사망자 (20년, 조사기준)	132 (이천화재 38명)	34	168	114
사고사망자 (19년, 조사기준)	116	27	164	114

들어가며

▣ 건설현장 사망사고 기인물 1 : 건축구조물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거푸집 동바리	사다리	이동식 비계	달비계	계 단	흙막이 지보공	기 타	계
계	106	69	138	77	39	62	41	37	17	14	149	749
1억 미만	19	7	92	10	2	27	16	14	3	0	49	239
1~50억	51	48	40	39	17	22	18	21	12	7	53	328
50억 이상	36	14	6	28	20	13	7	2	2	7	46	181
기타	0	0	0	0	0	0	0	0	0	0	1	1

들어가며

▣ 건설현장 사망사고 기인물 2 : 기계장비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항타기	콘크리트 펌프카	콘크리트 믹서트럭	기 타	계
계	63	62	52	33	13	10	6	6	48	293
1억 미만	12	19	9	4	1	0	0	0	7	52
1~50억	28	28	19	13	3	3	2	2	18	116
50억 이상	21	15	16	15	9	7	4	4	22	113
기타	2	0	8	1	0	0	0	0	1	12

들어가며

▣ 건설현장 사망사고 기인물 3 : 종 합

기인물	건축 및 구조물	기계 장비	부속물 및 설비	기 타	총 계	12대 기인물 소계 (비 중)	
계	749	293	168	93	1,303	779	(59.8%)
1억 미만	239	52	32	23	346	231	(66.8%)
1~50억	328	116	77	45	566	344	(60.8%)
50억 이상	181	113	55	22	371	193	(52.0%)
기타	1	12	4	3	20	11	(55.0%)

들어가며

▣ 주요제도 1 : 시공사

* 토건 3천개사, 건축 7천개사, 토목 3천개사, 조경, 산업설비 등

	120억원 이상	50~120억원	1~50억원	1억원 미만
안전관리자	전임	겸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술지도	해당 없음	의무(예외 있음)	의무(예외 있음)	해당 없음
무료 기술지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지원 가능
유해위험방지계획	대다수	일부	소수	해당 없음

들어가며

▣ 주요제도 2 : 발주자

	주요 내용	위반시 제재
안전보건대장	▪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전문가에게 적정성 확인받을 의무〈산안법 제67조제1·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정비용·기간 보장	▪ 건설현장 안전을 우선 고려한 설계, 시공을 위해 적정한 공사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함〈산안법 제67조제3항〉	▪ 없음
안전보건 조정자	▪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산안법 제68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공사기간 단축 공법변경 금지	▪ 설계도서 등에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①공사비 줄이기 위해 위험한 공법 사용 또는 ②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금지〈산안법 제69조〉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 발주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산안법 제7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1년 주요 정책 및 사망사고 현황

- `19.7월 패트롤점검 도입에 이어, `21.7월 현장점검의 날 도입(월 2회)
- 27개 사망사고 다발 대형 건설사 지정, 사망사고 발생 시 컨설팅 및 전국현장 감독
  * 27개사 연도별 사고사망자 수: `20년 39명 `21년 47명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건설업 자율 안전점검표, 중처법 해설서 등 제작 배포

	계	1억원 미만	1~50억원	50억원 이상	50~120억원	120~800억원	800억원 이상
21년	358	105	134	119	31	41	47
20년	448	114	168	166	34	93(이천)	39
19년	421	114	164	143	27	65	51

최근 건설경기 동향

☑ '21년 현황

- (기성액, 불변) '20년 118조 987십억원 → '21년 113조 171십억원(-4.9%)
  (취업자) '19년 2,020천명 → '20년 2,016천명 → '21년 2,090천명(3.7%)

☑ '22년 현황(잠정치)

- (기성액, 불변) '21.1~4월 35조 580십억원 → '22.1~4월 35조 56십억원(-1.6%)
  (취업자) '21.1~5월 1,954천명 → '22.1~5월 2,104천명(7.6%)

☑ 건설업 55세 취업자 비중: ('19.5) 32.6% ('20.5) 31.9% ('21.5) 378%

→ 기성액과 취업자의 비동조화 by 고령층 신규유입 급증

`22년 정책방향

☑ 건설사 지원 및 감독

- 안전관리 취약 건설사 컨설팅 제공(300개사 내외)
- 매월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정책방향 등 정보 공유
-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 배포 및 자체 점검 독려
- 1천위 이내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시 전국 현장 감독 및 본사에 결과 통보

`22년 정책방향

- 공사금액별 현장 지원 및 감독1 : 50억원 이상
  -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현장: 이행 확인 강화 및 취약 현장 감독/작업중지
  - 기술지도 대상 현장: 평가등급이 낮은 기관 지도 현장 중심으로 관리
  - 기타 현장: 지방관서 중심 연락체계 구축 및 지원
- 공사금액별 현장 지원 및 감독2 : 1억원 미만
  - 무분별한 현장 선정 및 지도 방식 폐지, 고위험 현장/작업 지도만 인정
  - 위험경보 발령, 민간기관 협업 등 홍보전략 병행

`22년 정책방향

☑ 공사금액별 현장 지원 및 감독3 : 1~50억원

- 패트롤점검 지속('22년 45천개소 목표, 안전공단 중심),
  시정지시 미이행 현장은 지방관서 불시감독 연계
- 아울러, 현행 `추락재해 예방` 중심 점검 방식을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중심으로 확대

전체	12대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바닥/발판	굴착기
566	344	51	48	40	39	28
100%	60.8%	9.0%	8.5%	7.1%	6.9%	4.9%

고소작업대	사다리	달비계	트럭	이동식비계	거푸집동바리	이동식크레인
28	22	21	19	18	17	13
4.9%	3.9%	3.7%	3.4%	3.2%	3.0%	2.3%

`22년 정책방향

☑ 제도정비1: 안전보건관리비

– 기업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사용범위 확대 필요
VS 부정 사용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하면 엄격한 제한 유지 필요

☞ 위험성평가 발굴품목(노사합의 要), 스마트안전장비 제한적 사용 허용

☑ 제도정비2: 기술지도 의무제

– `22.8월부터 계약주체 시공사 → 발주자 변경 : 시공사 – 지도기관 간 갑을관계 해소

☞ 지도기관의 기술지도(월 2회) 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with 패트롤, 지킴이

`22년 정책방향

☑ 제도정비3: 산업안전기준

– `예방` 기준이자 `처벌` 기준의 성격 : 실제 사망사고에 기반한 정비 필요

☞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인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 분석을 통해 거푸집, 흙막이지보공 등 안전기준도 정비 검토

☑ 제도정비4: 사망사고 발생 확인서 발급 with 평균산재율 확인서 개편

–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 확인서를 발급하여,
원청(발주자)의 하청(원청) 사망사고 발생 현황 확인 유도

☞ 사망사고 다발 건설사의 시장 퇴출 유도

`22년 사망사고 발생현황 (잠정, 비공식)

☑ 전 체: 1.1.~ 5.31.

- 전년 동기 150명 대비 20명 감소한 130명
- 50억 이상은 전년 동기 52명 대비 7명 감소한 45명(-13.5%)
  1~50억은 전년 동기 53명 대비 1명 감소한 52명(-1.9%)
  1억 미만은 전년 동기 98명 대비 13명 감소한 85명(-26.7%)

☑ 중처법 시행 후: 1.27.~ 5.31.

- 전년 동기 134명 대비 31명 감소한 103명
- 50억 이상은 전년 동기 45명 대비 14명 감소한 31명(-31.1%)
  1~50억은 전년 동기 46명 대비 2명 감소한 44명(-4.3%)
  50억 미만은 전년 동기 89명 대비 16명 감소한 73명(-19.1%)

당부사항

- 경영자 – 본사 안전담당자 – 현장소장 – 작업자 간 의사소통 구조
  - 작업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
    작업자는 위험요인을 쉽게 신고할 수 있나? 현장소장은 신속히 개선할 수 있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제반 활동은 본사에서 어떻게 보고받고 있나?
  - 현장소장은 안전관리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인전관리자의 일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관리
  - 본사와 현장의 관리자들은 어떤 장비, 작업이 위험한지 알고 있나?
  - 작업자들은 작업전 점검미팅에서 `안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나?
    혹시 `안전하게 하자!`라는 추상적인 구호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감사합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삼성물산㈜

협력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및 평가: 안전인정제(CSMS)

*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컨설팅 그룹은 우수 협력사 육성을 바탕으로 안전, 시공, 품질 동시 확보를 위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및 안전인정제를 운영합니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의 이행을 위한 컨설팅**

- 협력회사 안전보건관리체계 (P-D-C-A) 구축 지원

1단계
- 동일 공종 Grouping
- R&R 구축 협의 및 운영 절차·기준 공유
- 경영책임자 이행 확인 의무 부여

2단계
- 본사 및 수행 현장 적용
- 이행 결과 공유
- 운영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3단계
- 본사 및 현장 운영 상태 확인 (심사)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속 이행
- 성과 분석 및 지속 이행에 대한 적시 모니터링

② 안전인정제도 도입 및 운영

▪ **협력회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준에 대한 인정 제도**

- 高위험 5대 공종 및 정예화 5개 공종 대상 우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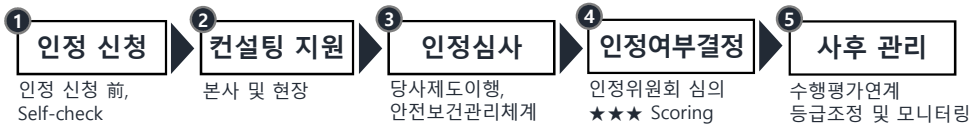

▪ **등급체계 차등을 통한 자발적 수준 향상 도모**

- Three Star Scoring & Grading System 도입

* British Safety Council의 Five Star Audit 프로세스 기반 정량화된 평가 시스템

MARK (%)	STAR Score	적격 수급사 선정 연계
85~100 : 우수(검증된 모범사례)	★★★	입찰 참여 기회 우선부여
60~84 : 좋음(일부 요소 검증)	★★	개선의 기회부여
0~59 : 부적절(광범위 개선 필요)	★	입찰참여 배제

안전인정제도 운영

도입 배경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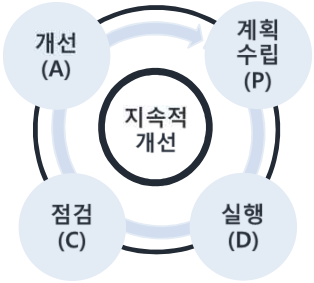

7가지 핵심 요소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경영자 리더십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운영 절차

01 인정제 신청
- Self Check 실시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02 컨설팅 지원
-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 삼성 내부 심사원 컨설팅 및 교육
  - 현장 및 본사 단위 지원, 피드백

03 인정 심사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기준 수립·준수 확인
- 삼성물산 안전보건제도 준수 및 이행 수준

04 인정여부결정
- 인정심사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 결정
  - 인정심사위원회 심의/결정

05 인정서 수여
- 인정서 수여
  - 수준 향상 및 수행평가 연계 지속 관리

컨설팅 지원 및 심사

본사 분야

- Plan (경영자의 Leadership)
  - 목표와 경영방침
  - 예산편성 및 집행
  - 관계법령 관리
  - 종사자의 의견 청취
- Do (실행 및 운영)
  - 조직구성 및 책임 이행
  - 유해위험요인 관리
  - 책임자 업무수행 지원
  - 비상사태 대응 관리
- Check & Action (점검 및 개선)
  - 기술 이행 점검
  - 안전보건 조치 능력 개선

현장 분야

- Do (실행 및 운영)
  - 현장조직 안전보건 업무 이행
  -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관리
    (위험성 평가, 대책 이행, 교육 훈련)
  - 안전보건 활동
    (원도급사 및 발주처 주요 안전보건활동 이행)
  - 안전보건 관계법령이행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안전인정제(CSMS) 운영 현황

<CSMS Process>

대상 선정 (협력사 지원) → 협력사 컨설팅 → 인정심사 → 등급부여 (1★~3★) → 우수사 (3★) 입찰참여 기회확대 → 사후관리

* 상하반기 협력사 수행평가 연계 등급조정

그간의 추진 경과

'22. 1월

① **인정절차 및 기준 마련**(P-D-C-A 23개항목)
- 협력사 중처법 안전보건의무/준수절차서 배포
- 주요 위험 5대 공종 대표 협력사(10) Simulation
- 외부전문가 및 단체 안전인정제 검토회 검증

'22. 2월

② **안전컨설팅** * 고위험10개 공종 120개사 대상
- 골조/강구조(33개사)

'22. 4월

③ **인정심사**(13개사)
- **1차 인정위원회(4.20-21) 시행**

'22. 5월

④ **인정위원회 운영**(20개사)
- 5월 2차 인정위원회

* 6월 진행: 기계설비 및 하이테크UT(28개사) 컨설팅 및 심사

안전인정제 핵심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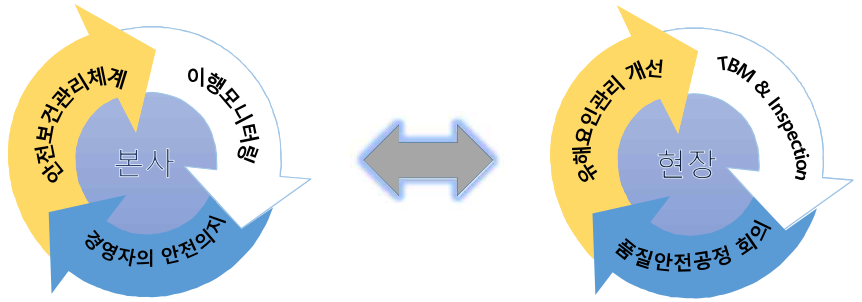

본사부분(60)
- 안전보건 목표, 조직 구성
- 유해위험요인 관리 – 확인/개선
- 안전보건활동 이행점검
-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현장부분(40)
-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 구축
- 일일 수시위험성평가 활동
-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협력사 안전인정제 도입 효과

골조/강구조 공종 12개사에 대한 컨설팅 및 평과 결과 평균 71.6점까지 상승

컨설팅 前 · 後 비교

➢ **초기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은 평균 30.8점 수준**

→ **안전컨설팅 이후 평균 40.8점 상승** * 1차 심의 12개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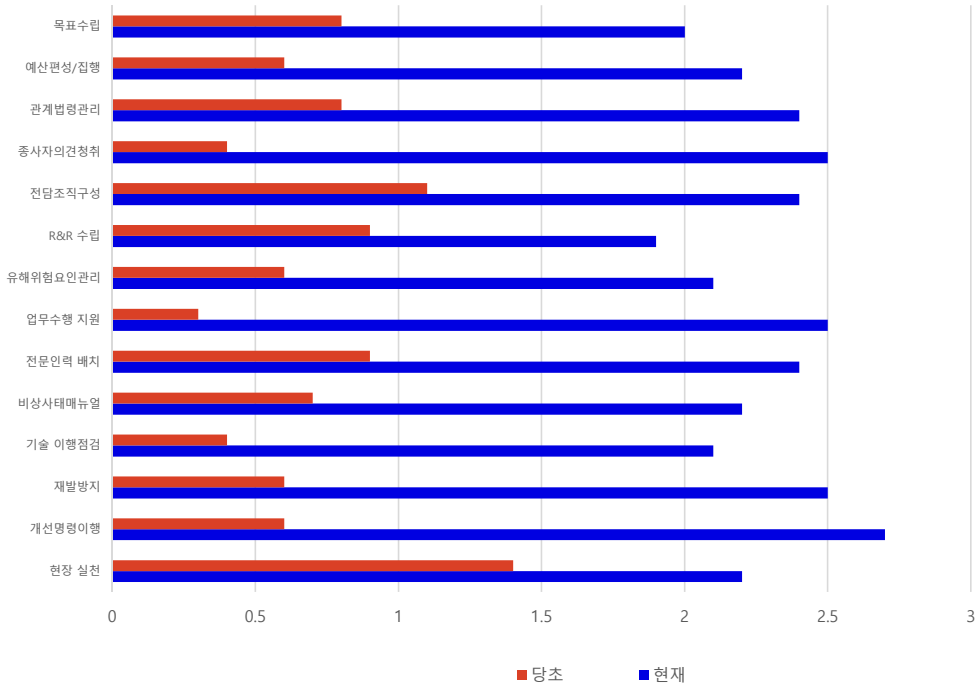

주요 항목별 향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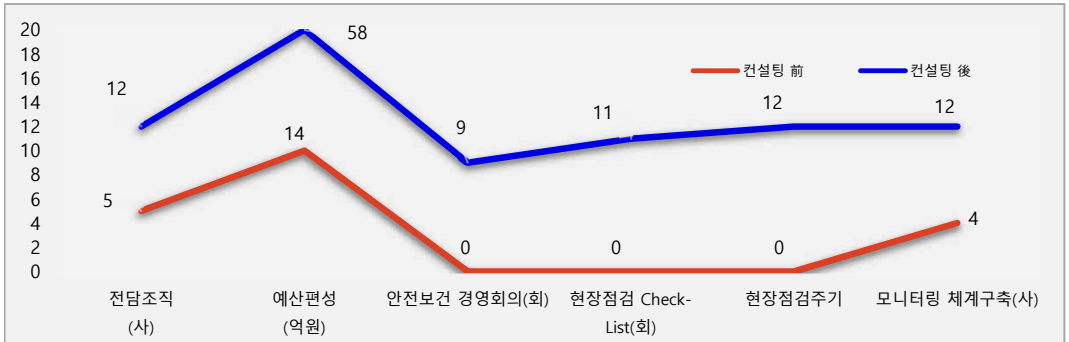

[경영진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지] [안전 모니터링 및 F/B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 전담조직 구성(7개사↑), 안전보건 예산 편성(43.9억↑)

✓ **경영책임자의 안전 참여도 증진**
→ 경영책임자 주관 경영안전회의 실시 및 F/B 시행(9개사↑)

✓ **전담안전부서의 Inspection 활동 활성화**
→ 점검Check-List 구축(11개사↑), 협력사 본사 주기적 현장점검(12개사↑)

✓ **시공사와 협력을 통한 적극적 안전보건활동 전개**
→ 자체 회의 실시, 주도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모니터링(12개사↑)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Specialty Construction Society

전문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동향과 효용, 과제, 향후 발전 방향

2022.07.04

전문건설 KOSHA 협의회

회장 이상준
㈜삼영기업
안전보건경영실 CSO(전무)

들어가며...

- 지난 10년 전문 건설업의 KOSHA인증 시스템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역량을 한 단계 Up-Grade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의한 인증 제도는 전문 건설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틀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의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효용성은 매우 적절하게 진행 되어 왔으며, 진행 되고 있다.
-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발전 방향을 위하여 실제로 전문 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법적인 제도하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 하고자 한다.

Who -
국내 건설업 안전관리 주체의 변화 필요

[안전법령의 노력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81년)
- 건설업 표준안전 관리비 제정 (88년)

41년간
원수급 중심의
안전관리 주도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22년)

□ 도급인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 → 패러다임 전환 “수급인 이제는 수면위로 올려야 할때”

☞ 예시) 전문건설업체 KOSHA MS 확대 필요

Who -
국내 건설업 안전관리 주체의 변화 필요

[건설산업 환경변화]

□ 공법기술 변화속도 가속 중

□ 하도급비율 확대 중

- 하도급에서 대부분 산재발생

□ 주1) 건설업 사망 만인율 정체수준

주1) 건설업 사망 만인율 추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58	1.66	1.65	1.72	2.0	1.75

* '21년 전 산업 0.43

How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개선 접근방법

[전제조건] ① 전문건설업 건설사 중심으로 접근

②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 방안 등 동기부여

③ 먼저 사망발생 가능 재해만 집중

How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개선 접근방법

□ KOSHA 인증 이후 안전보건 역량 증가 Case Study – 건설업에 국한하면 안됨

- 위험을 모든 계층에게 분담 / 책임 명확화

☞ [사망가능 위험작업] 본사 경영책임자, 사업부장, 사업팀장 / [그 외 위험작업] 현장소장

☞ 안전팀의 역할과 시공사업부(팀) 역할(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행

경영책임자 산하 안전팀은 제도마련, 모니터링 / 사업부장 (팀장)은 이행하도록 할 책임

- 매주 경영책임자 주관 안전성과 보고

. 사업팀장 점검결과, 사망재해 발생 가능 작업계획서, 위험작업일정(사업팀장 점검일정) 등

마치며..

□ KOSHA 인증업무 확대 개편 – 안전보건 역량 동기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연계한 규정 개정 필요

□ 전문건설업의 안전보건 비용 증가에 따른 법적 제도화 마련

EOD

이제 시작입니다.

큰 나무도 가느다란 나뭇가지에서 비롯 됩니다. 처음과 같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포럼

건설안전 정상화를 위한 전문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 모색

2022. 7. 4.

심 규 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 경제학박사)

목 차

1. 문제 제기 : 전문건설 안전의 핵심?

2. 원인 분석 : 놓치고 있는 것, '돈'

3. 해법 모색 : 적정공사비 확보

1. 문제 제기 : 전문건설 안전의 핵심?

위험 요인의 중복 ➔ 벼랑 끝 시공

시공, 고용, 산재 발생 등의 주체

저감 노력에도 줄지 않는 산재

(문제 제기) 전문건설사 산업안전 문제의 핵심은?
: 하도급자인 경우를 가정, 산재 발생 위험요인 검토

(1) 공사비(특히, 노무비) 부족
- (현상) '맞춰 먹기' 불가피 ➔ '빨리 빨리' 무리한 공기단축 ➔ 산재 위험 증가
- (원인) 발주자 삭감 + 원수급자 삭감 + 하수급자 스스로 저가수주 경쟁

(2) 불법 다단계 하도급
- (현상) 통제력 저하 + 반복적 공사비 삭감 ➔ 더 빨리 ➔ 산재 위험 증가
- (원인)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느슨 또는 불가 + 임금 단가 삭감 가능

(3) 저숙련 저임금 외국인 (불법) 고용
- (현상) 의사소통 저하 + 시공능력 부족 ➔ 효과적 대응 불가 ➔ 산재 위험 증가
- (원인) 삭감된 노무비에 '맞춰 먹기' + 임금 단가 삭감 가능

실제 산재 발생 위험도는 '합'이 아닌 '곱'으로 폭증

(1) × (2) × (3) ➔ 산재 발생 위험도 폭증

악순환 구조의 덫 ➔ 향후에는 더욱 악화

(1) 공사비(특히, 노무비) 부족 사례

- 발주자 설계금액 대비 실제 하도급 금액 비율 : 최저 약 25%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건설 계약 실태

발주자	공사명	발주자 설계금액(A) (억 원)	원도급 금액(B) (억 원)	하도급 금액(C) (억 원)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C/A)(%)
한국수자원 공사	한탄강댐 군 대체시설 공사	-	-	-	34.2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교량	125	118	62	49.6
	보현산 다목적댐	-	-	-	41.4
	안동댐 직하류구간 하천 정비	-	-	-	41.9
부산지방 해양항만청	감천항 정온도향상 외곽시설 설치	14.6	8.4	3.8	**26.1**
	부산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	45	30	11	**24.4**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터미널 하부공축조공사	50	-	20	41.1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	-	-	38 ~ 49

자료 : 김기현 의원실(서울경제, 2011.9.27. 2면 참조). 심규범 외(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 모 지자체 발주공사 : 발주자 대비 통상 하도급은 68%, 재하도급은 54%
  - ✓ 발주자(100)-원도급자(83)-하도급자(68=83×82%)-불법재하도급(54=68×80%)
-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 공사 : 원도급 대비 하도급은 35%, 재하도급은 14%
  - ✓ 현대산업개발 3.3m²(평)당 28만원 ➔ 한솔 10만원 하도급 ➔ 백솔 4만원 재하도급

(2) 불법 다단계 하도급
: 불법 재하도급 억제 법률적 근거 마련, 실효성 부족

❖ 재하도급 금지(1998, 건설산업기본법)
- ✓ (성과) 법 규정 마련
- ✓ (한계) 시공참여자로 위장한 재하도급 만연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 (중략)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건설산업기본법)
- ✓ (성과) 재하도급을 야기한 제도 삭제 ➔ 근로계약서 증가(심지어 '백지')
- ✓ (한계) 정상시공 여건 불비 ➔ 불법 재하도급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 추이 (건설근로자 응답)

설문조사 연도	1996년	2000년	2004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근로계약서 작성(%)	28.0	31.3	22.2	**50.8**	**69.0**	**55.3**	**66.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1996),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설문조사(200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2004,2009,2013,2015)

(규정) 전문건설사(하도급사)의 직접 시공 및 고용 vs. (현실) 다단계 하도급 온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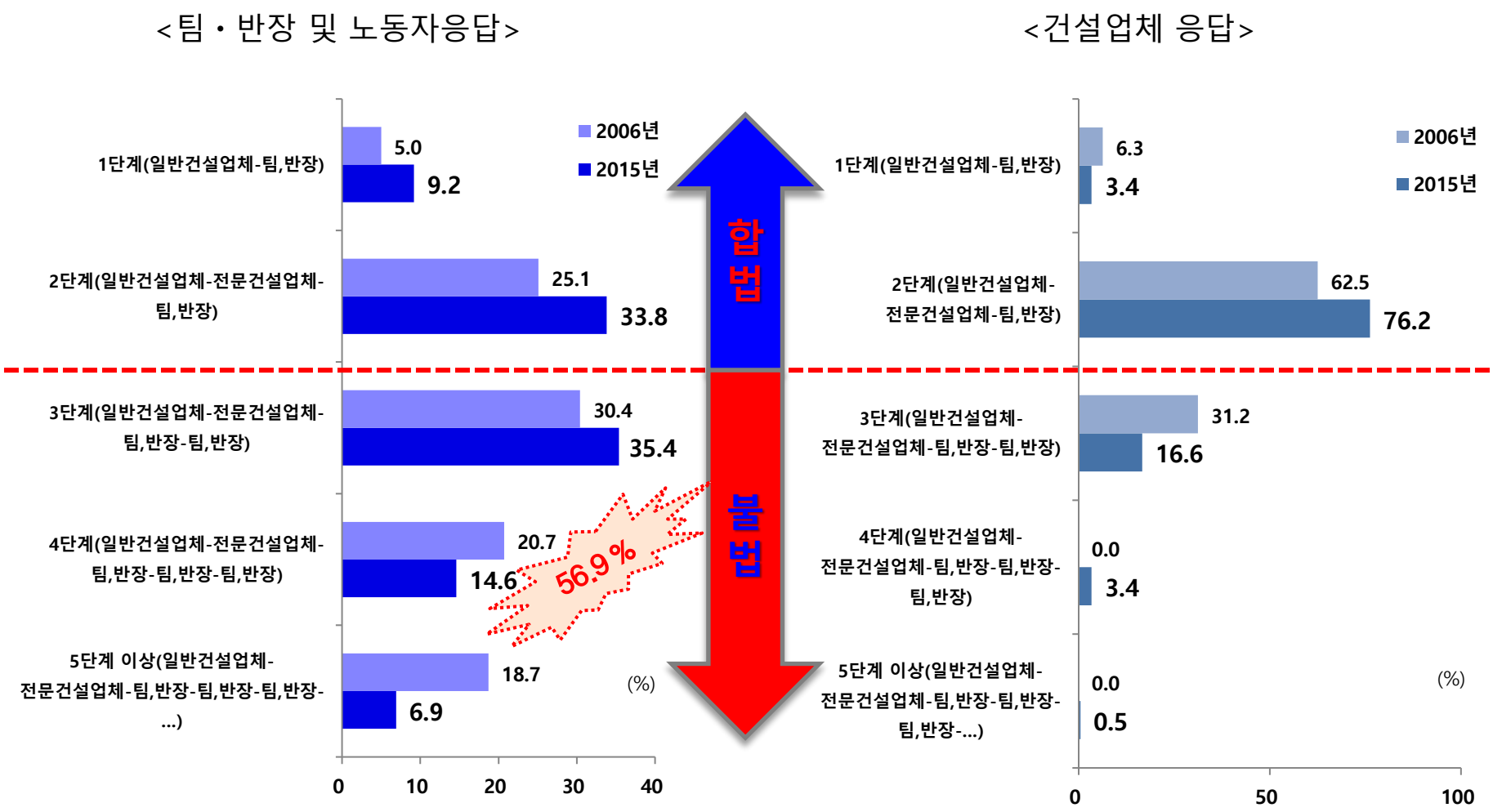

자료 : 심규범. 이의섭. 손태홍. 여경희(2015),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이 '산업안전보건' 위협

자료 : 심규범 외(2011),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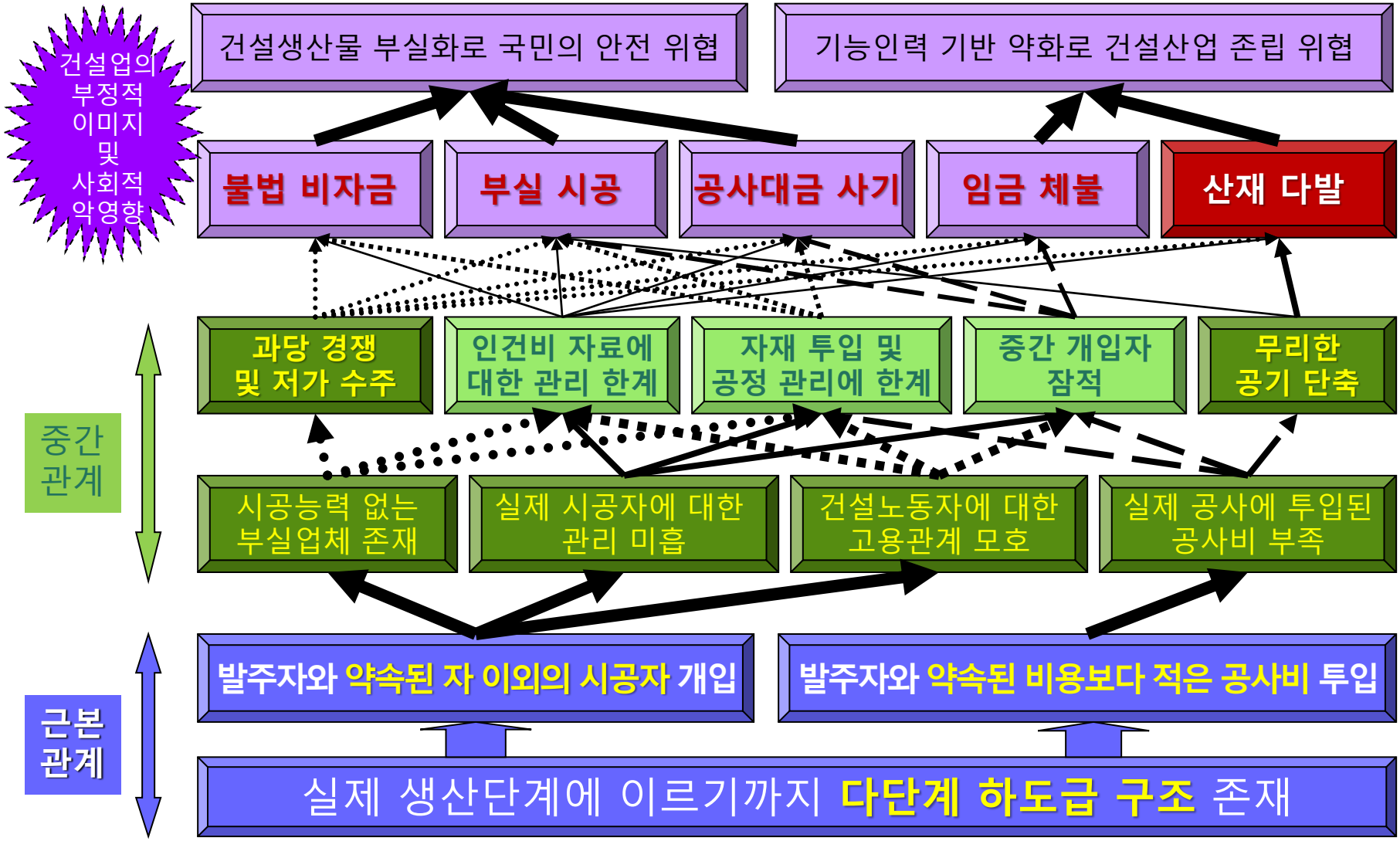

(3) 저임금 저임금 외국인 (불법) 고용 사례
: 불가피한 '과도한 외국인 증가'는 '독초를 먹는 셈'

- 건설현장 저가수주 경쟁에서 비롯된 '외국인 고용 증가' : 건설안전 위협
  - 삭감된 노무비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 : 현장실무자들과의 면담 결과
    - 작업 팀 감축 : 예컨대, 통상 10명인 작업 팀을 7~8명으로 축소
    - 저임금노동자 투입 : 고임금의 A급 대신 중/저임금의 B급 투입
    - **내국인력을 외국인력으로 대체** : 순응적인 저임금 외국인력 투입(체불,산재)
  - "하지만 외국인을 마냥 늘릴 수는 없어" <고용허가제 활용 전문업체 현장소장>
    -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품질 저하, 산재 위험 증가(2015년 면담)
    - '내국인 : 외국인 = 5 : 5' ➔ 어렵지만 공사 수행 가능
    - 저가수주 경쟁 점점 더 격화, 노무비 더욱 큰 폭으로 삭감 지속
    - **현재 '내국인 : 외국인 = 2 : 8'**
      ➔ 품질 저하, 산재 증가, 하자 발생 우려 심각 ➔ 해서는 안 될 일

"돈만 있다면 내국인 숙련공으로 작업할 것,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알면서도 독초를 먹는 셈"

과도한 노무비 삭감 → 작업 팀 축소 및 무리한 공기단축 → 일자리 감소, 노동강도 강화, 품질 저하, **산재 증가**

건설현장의 저임금 외국인 고용 만연
: 불법 외국인력 과다 + '저임금' (본국 대비 고임금) ➔ 내국인 대체

- 언론에 비친 건설현장의 일자리 위기 : 오래 전부터 시작, 전국적 상황

익산 산업건설현장 내국인 노동자 외면 (전북도민일보, 2019-1-20)
… 익산 지역 산업건설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일용직 10명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는 절반도 못 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타일, 미장, 페인트, 목수 등 기능공들만 내국인 노동자였으며 대부분 고령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산업건설현장에서 내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임금과 허드렛일 등 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기 편하기 때문이다. … "노동시장의 개방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건설현장에 집단으로 몰려 마구잡이식 일감을 싹쓸이 하고 있다."…

[르포] 경기불황에 새벽 인력시장도 '전쟁터'"…중국 동포와 '가격 경쟁'에 시름
(이뉴스투데이, 2017.02.02)
…이때 그는 건너편을 가리키며 중국 동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단가가 안 오른다. '불체자'(불법체류자)가 많다. 단가가 안 맞으니까 우리 일자리를 점점 뺏기고 있다."…

[현장르포]경기·인천지역 인력시장을 가다
공제회 가입 8%가 외국인 中 기술자 늘어 일감 싹쓸이(경인일보, 2017-01-24)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중국 등 외국인 기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로 8년 동안 일했다는 정모(58)씨는 "중국 기술자들이 적은 일당으로 일감을 싹쓸이해 가니까 우리 일거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외국인 임금은 내국인 대비 낮아, 외국인 과다

: 저가수주 경쟁 ➔ 노무비 부족 ➔ 저임금 불가피 ➔ 외국인력 고용

내/외국인 간 숙련별 임금(일당 기준) 격차 : 한국인>조선족 동포>기타 외국인

구 분	한국인		조선족 동포		기타 외국인	
	숙련	비숙련	숙련	비숙련	숙련	비숙련
평균(만원/1일)	20.3	14.6	18.7	13.6	18.1	12.9
한국인 임금 대비 격차(만원)	0.0	0.0	**1.6**	**1.0**	**2.6**	**1.7**
한국인 임금 대비 비율(%)	100.0	100.0	**92.7**	**93.4**	**88.2**	**88.8**

자료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설문조사, 2021

외국인 건설노동자 공급 규모 추정(2021년 현재)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력 수	귀화자 (내국인 신분)	영주(F-5) 조선족 (내국인 신분)	실제 외국인력 수(명)		
(A)(명)	(B)(명)	(C)(명)	(D=A-B-C)	합법근로	**불법근로**
354,157	5,491	32,286	316,380	37,358	**279,022**

출처 : 강승복 외(2021),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저임금 저숙련 외국인 ➔ 품질, 안전, 채산성 등 저하
: 결국 전문건설사에게도 유리하지 않아, '저가함정'에 갇혀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예상되는 단점 : 건설근로자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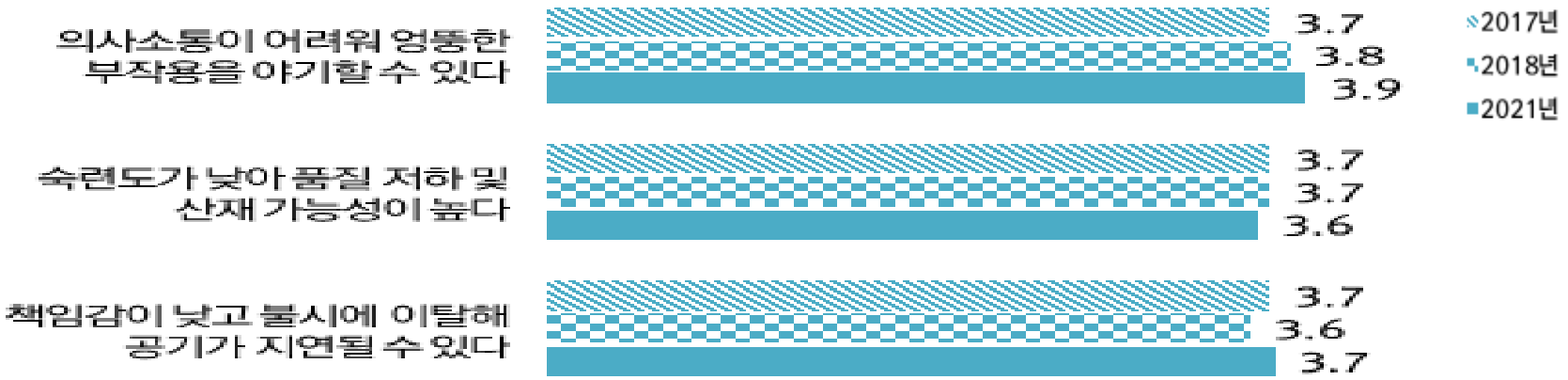

주 : 1은 '매우 아니다', 2는 '아니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를 의미함.

한국인 대비 외국인 채산성지수 비교 : 건설사업주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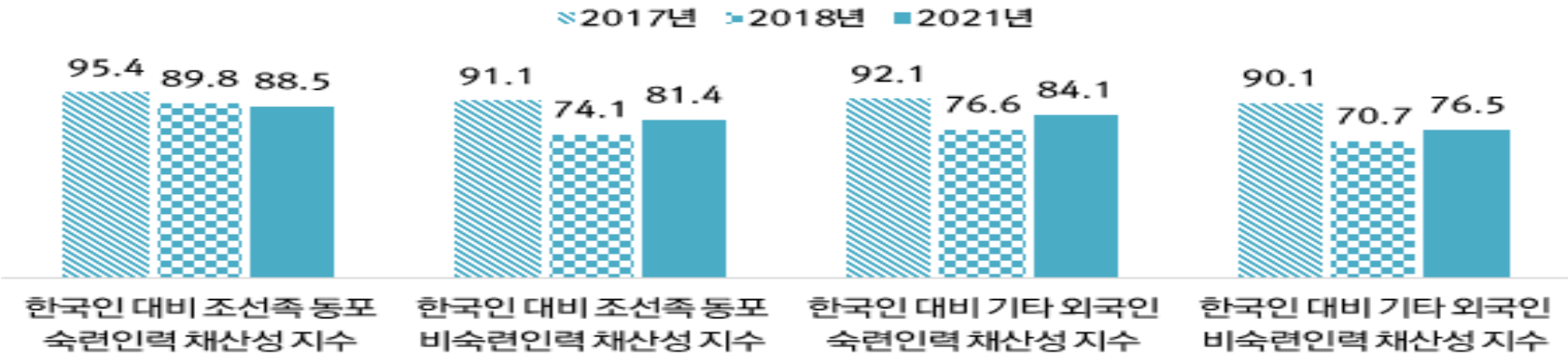

주 : 채산성 지수= (한국인 대비 외국인 기능 수준 비율 ÷ 한국인 대비 외국인 임금비율) × 100
자료 : 강승복 외(2021),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 건설근로자공제회

2. 원인 분석 : 놓치고 있는 것, '돈'

현장의 목소리, '돈' 문제가 핵심

비정상적 시공 ➔ 비정상적 안전

공사비 부족 + 다단계 하도급

건설현장 산재 예방 개선 방안(설문조사)
: '공사비'가 '산재의 근본 원인'이자 '개선 노력의 시작'

건설 산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 일반건설업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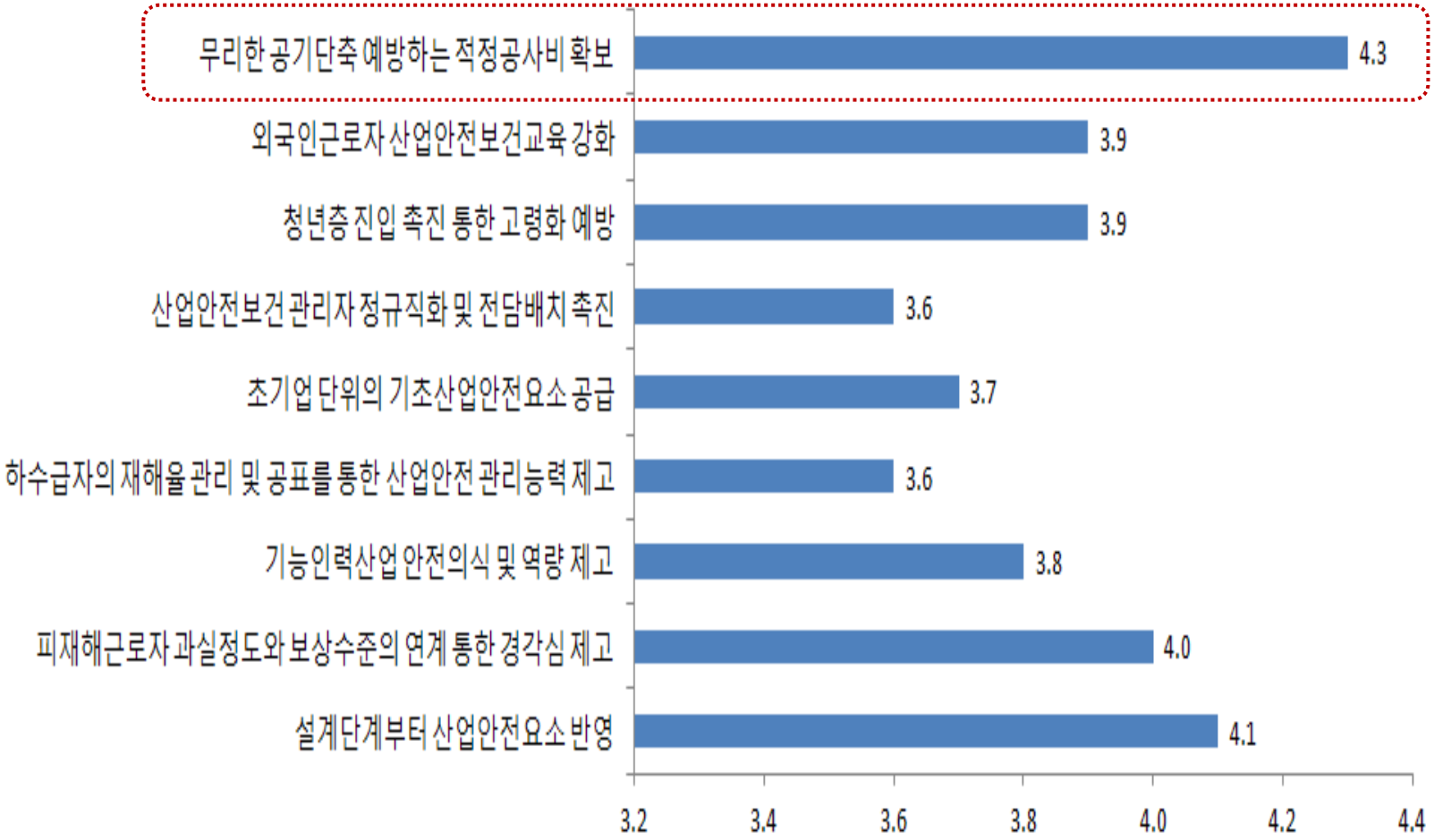

주 : 점수는 1 '매우 아니다' 2 '약간 아니다' 3 '보통'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를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설문조사, 2011.10.

건설현장 산재 예방 개선 방안(설문조사)
: '공사비'가 '산재의 근본 원인'이자 '개선 노력의 시작'

재해 예방 대책의 상대적 중요도 : 전문건설업체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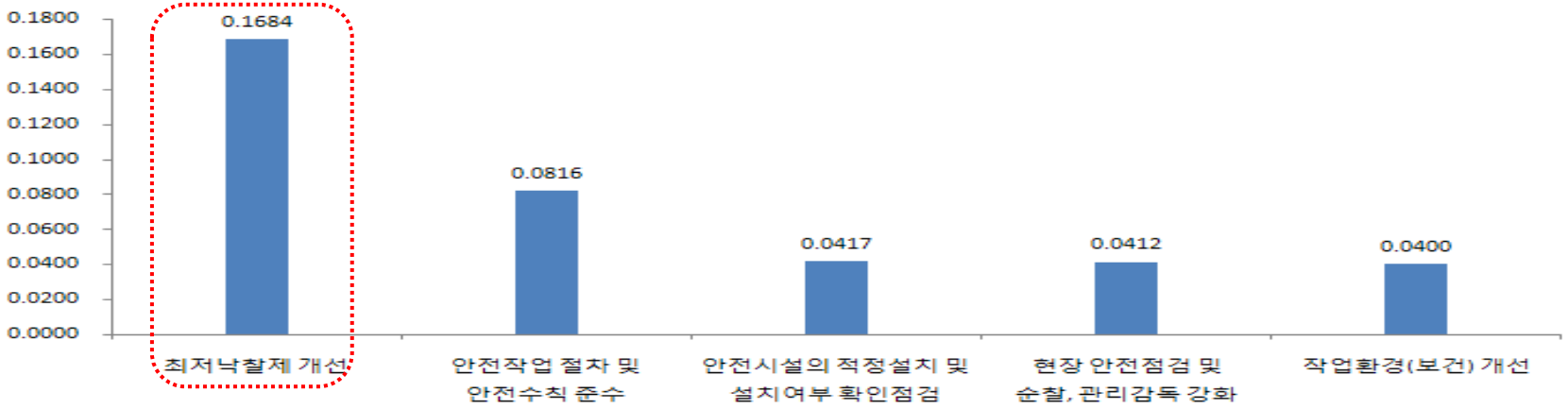

자료 : 손기상 외(2008), 전문건설업체 발생 재해의 원인 분석 및 관리 대책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참조.

건설 현장의 산재 증가 이유 : 고용허가제 활용 전문업체 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관련 설문 조사(건설업체 대상), 2014. 9.

건설현장 산재 관련 현장의 목소리
: '산재의 근본 원인'이자 '개선 노력의 시작'은 '적정공사비'

- 아파트 신축현장 종합건설업체 안전과장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 입찰 및 도급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 고용허가제 활용 현장 소장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장 주된 산재 발생 원인은 **공사비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한 공사비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다는 '공기'가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무리해서라도 '빨리빨리'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한 현장에서 산재가 더 많고 피재자 중 불법 취업자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면 당연히 노무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저임금의 불법 외국 인력을 선호**하게 되며 무리하게 '빨리빨리' 서두르다 보면 산재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건축현장 전문업체 소장

"원청의 낙찰률이 63%, 하청인 우리 낙찰률은 45%, 우리 현장에서 안전은 사치"

"추락사고를 막는 방법이 안전대를 매고 안전고리를 체결하는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부족한 공사비에 '맞춰 먹으려면'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가피**한데,
안전고리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조차 작업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 지키기 어렵다."

"공사비가 부족해도 관리만 잘하면 된다" … 과연 그럴까?

➔ '잘못 꿴 첫 단추'(저가낙찰)에 대한 사후적 치유 불가능

- **(저가낙찰현장 원청현장소장) '잦은 감사', 추가 지출 증가로 시공여건 더욱 악화**
  - (80% 미만 현장, 분기별 감사) 감사준비(중단, 청소, 입간판 교체 등)로 추가 지출 ➔ 개선 한계
- **(저가낙찰현장 감독관) "매일매일 불안", 최선의 선택 '당장 아니면,,, 묵인'**
  - (저가수주 현장의 모든 참여자 생각) 처음부터 '정상시공은 불가능하다'
  - (규정 준수 요청에 대한 건설업자의 대응) 느닷없이 시방서 규정, 안전관련 제반 규칙, 합법 고용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라고 요구하면, **말단의 시공자는 공사를 포기**
  - (그에 따른 발주자의 대응) **공사비 증액 불가**, 새로운 시공자로 대체하는 과정에만 3~4개월이 소요, **공사기간이 부족해진 만큼 공기를 더욱 단축**해야
  - **(저가현장 발주자의 최선의 대책)** 이러한 속내를 잘 알고 있는 저가낙찰 현장의 경험 많은 감독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당장 무너지고 죽지 않는 한, 눈 감아 버리는 것'**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물이 새고, 어이없는 부실시공이 감춰지고,
공공공사 현장인데 불법 고용이 만연하고,
많은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일 듯

(종합) 공사비 부족 ➔ 시공 비정상➔ 안전 비정상
: 위험을 무릅쓰고 벼랑 끝에 내몰려, **'정당화'**하기에 이르러

- **과도한 공사비 저하** ⇒ 산업안전의 필요성은 인정, **저가수주 현장에서 산업안전은 사치'**
  -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은 알고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추장스런 존재'**
  - **(현실적 진단)** 위험상황을 몰랐다 보다는 **삭감된 돈이 이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몬 것**
  - **(스스로 정당화) '그 돈으로는 어쩔 수 없어', '그 돈으로 이 정도면 잘 한 것 '**

다단계 하도급과 반 토막 공사비는 그대로 둔 채,
처벌과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면 안전이 나아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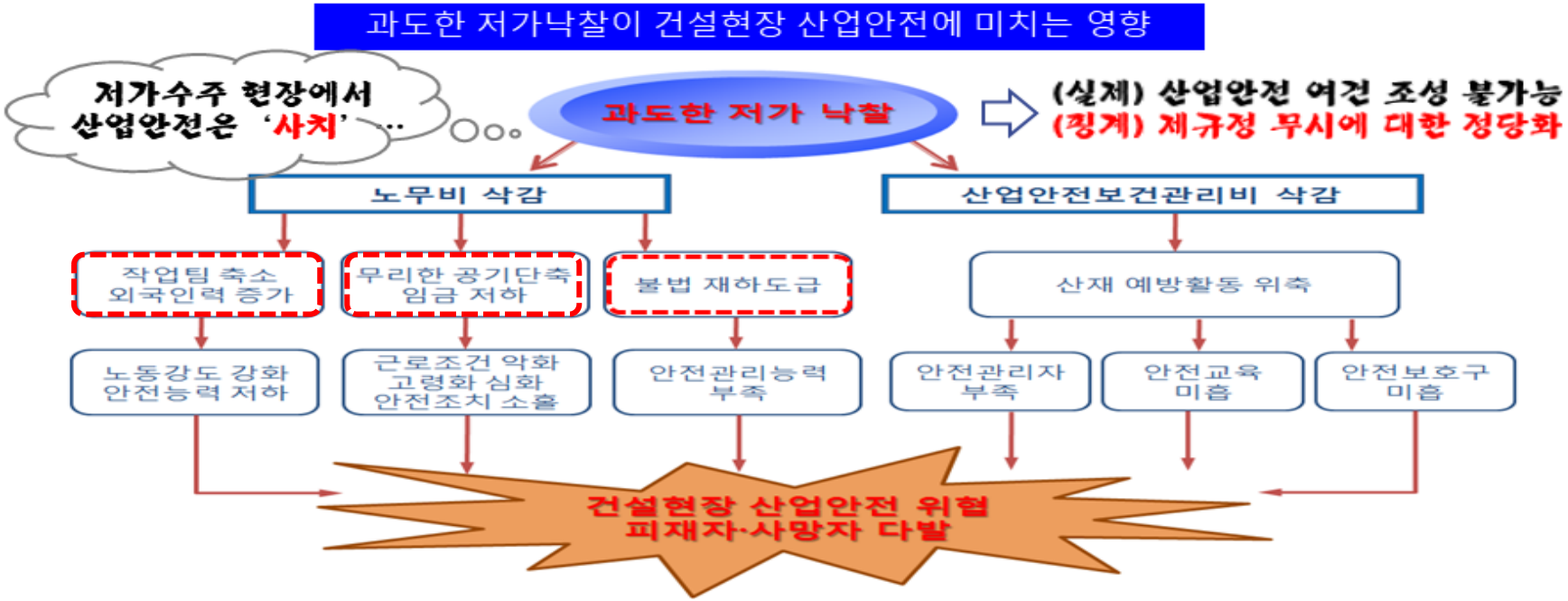

자료 : 심규범(2011), 저가낙찰이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 건설공사 입찰제도 관련 건설안전보건 토론회(강성천 국회의원실) 참조

'코 앞의 예산 절감' ➔ '공사비 부족' ➔ 비정상 시공 ➔ 비정상 안전 ➔ 노동자/국민 생명 위협

- 건설 관련 안전의 개념과 사고의 표출 형태
  - (시공 과정의 안전)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 산업안전 ➔ 산재, 재해율, 사망만인률 등
  - (사용 과정의 안전) 일반 국민들의 안전 ➔ 시설물안전 ➔ 사고, 붕괴, 화재 등

    *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등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구성 : **'초기 건설비는 빙산의 일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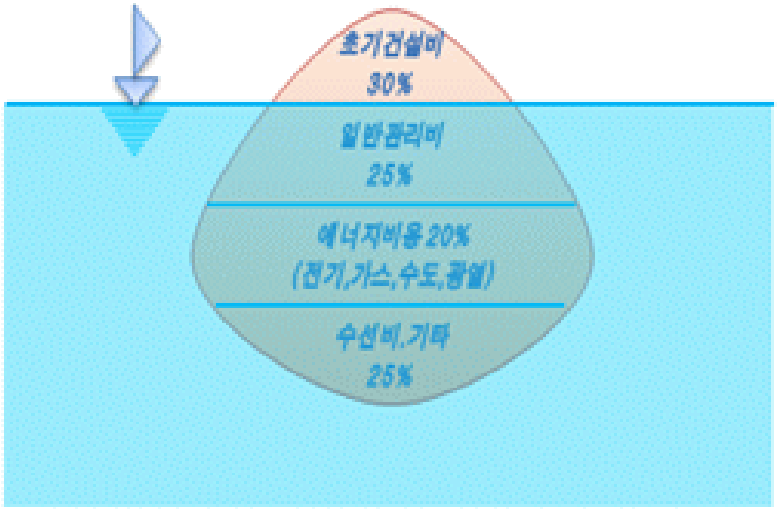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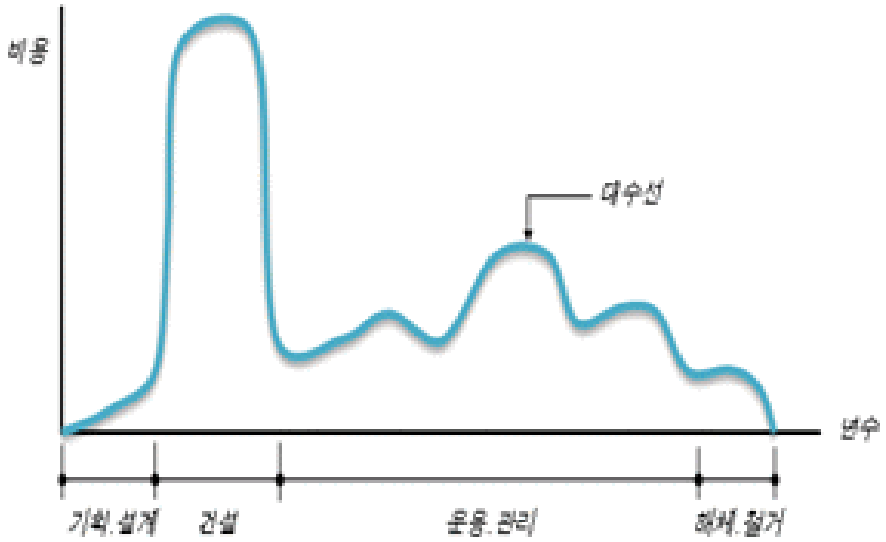

자료 : 건축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2011, 성안당)

➔ '코 앞의 예산 절감'이 아니라 '보다 멀리 내다보는 정책 철학' 필요

(종합) 다양한 건설안전 노력, 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

- 다양한 건설안전 제고 노력, 지속적 확대 강화
  - 기술.장비.소재 개발, 기술적 금전적 지원, 교육 확대, 규제 및 처벌 강화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건설현장 재해
  - **(건설업 사망만인률) 2016년 1.76‰ ➔ 2020년 2.48‰**
- **'중대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지?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짚어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 **건설 안전을 위협하는 공통 원인 : '공사비 부족+다단계 하도급', 하지만 개선 노력은 거의 없어**
  - (시공 과정 안전) 공사비 부족 ➔ 무리한 공기 단축, 저임금 저숙련자 증가 ➔ 재해 증가
  - (사용 과정 안전) 공사비 부족 ➔ 부실 증가, 유지관리비 증가 ➔ 사고 및 비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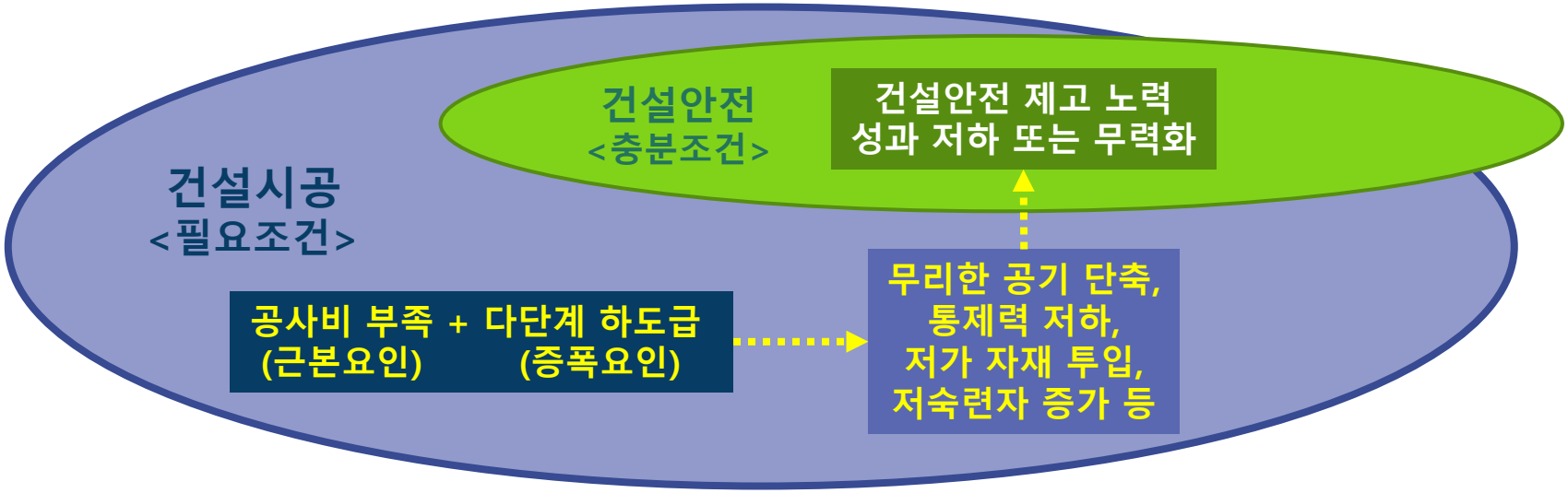

건설현장 '산재 다발' 등 공통 원인 : "제 살 깎기" 저가수주 경쟁

➔ 도급단계 하위의 약자에 부담 전가 ➔ 약자의 붕괴 ➔ 품질/안전/일자리 등 붕괴

● 산재 다발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의 공통 근원 : 공사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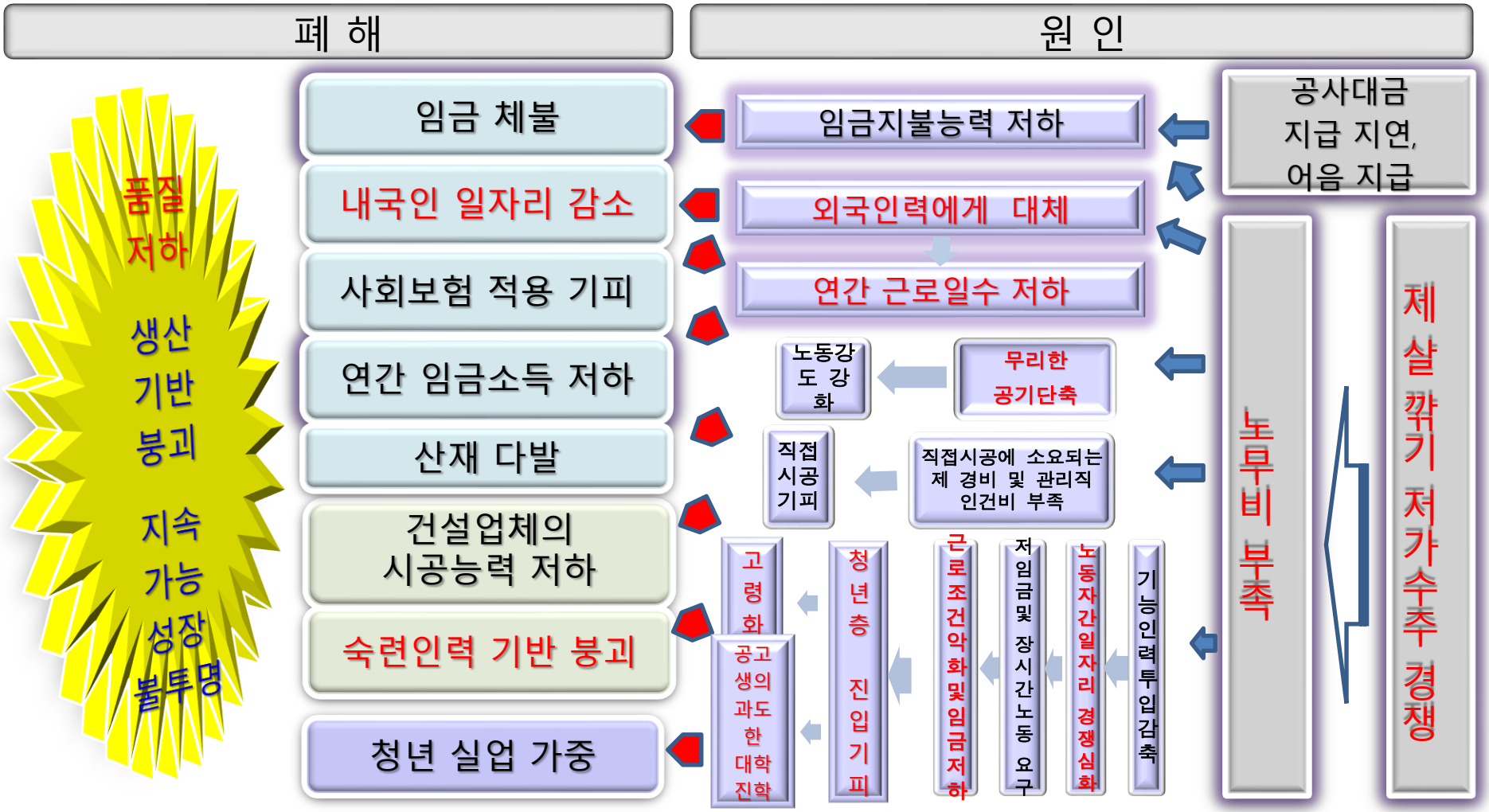

자료 : 심규범(2010.3), 건설산업의 일자리 동향 및 창출 전략, 15주년 개원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사비 부족’의 원인 : 발주자의 삭감? 입찰자의 삭감?

➔ ‘공사비 부족’의 진원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임금 삭감 경쟁”

각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제 살 깎기’ 경쟁의 진원지 : 노동자 간 ‘임금 삭감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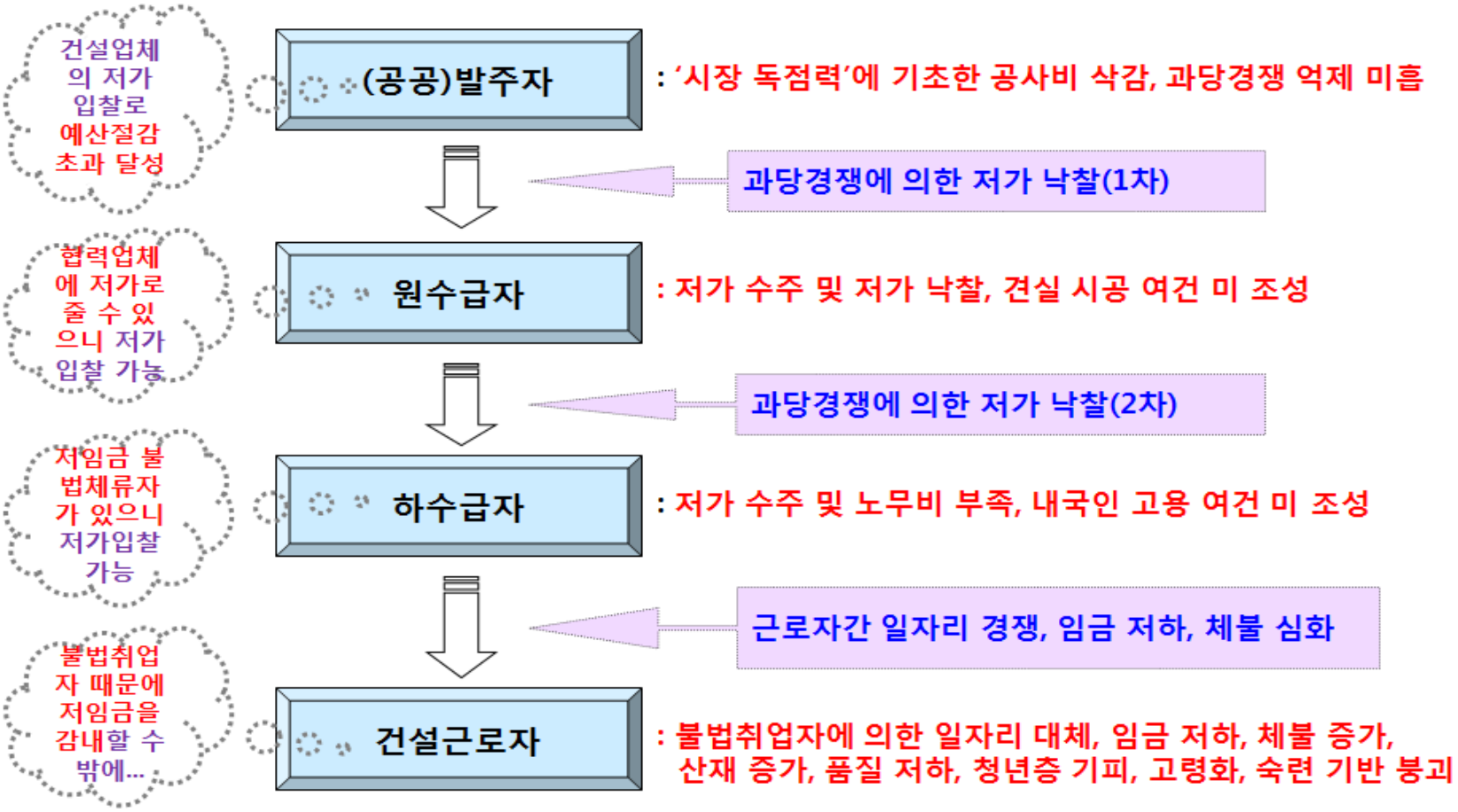

⇒ ‘임금 삭감 억제 장치’ 없이는 해결 불가, 입찰제도만의 변화로 대응 불가

현행 제도에 내재된 '저가수주 경쟁' 구조적 악순환
➔ 시장실패 ➔ '효과적 정부개입' 필요(가격경쟁➔기술경쟁)

<한국>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 구조
: 시장기능 작동 실패, 빗나간 정부개입(예정가격 연동 낙찰률)

발주금액 1 (품셈*시중노임단가, 또는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100% 미만 낙찰률

기술력과 괴리, 가격경쟁 치중

반영

낙찰금액 1 (품셈, 시중노임단가,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의 조사 대상)

발주금액 2 (품셈*시중노임단가, 또는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100% 미만 낙찰률

반영

낙찰금액 2 (품셈, 시중노임단가,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등의 조사 대상)

발주금액 3 (품셈*시중노임단가, 또는 실적공사비, 표준시장단가)

o

<미국 공공공사, 독일>
정상금액의 축적 : 시장기능 작동

발주금액 ≒ 낙찰금액

기술력 반영, 가격경쟁 불가

정상적인 금액의 축적

'실적공사비' 방식 효과적

비결은... 입찰자의 기술력에 의한 경쟁, 저가덤핑 억제장치

(객관적 기술력 없이는 깎고 싶어도 못 깎아 ...)

놓치고 있는 '중대한 첫 단추'… '안전과 시공은 따로 있지 않아'
: **'제값 확보' ➔ '누수 없는 전달' ➔ 시공 정상화 ➔ 안전 정상화**

- 시공 및 안전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 : **충분한 파이(pie)의 확보 및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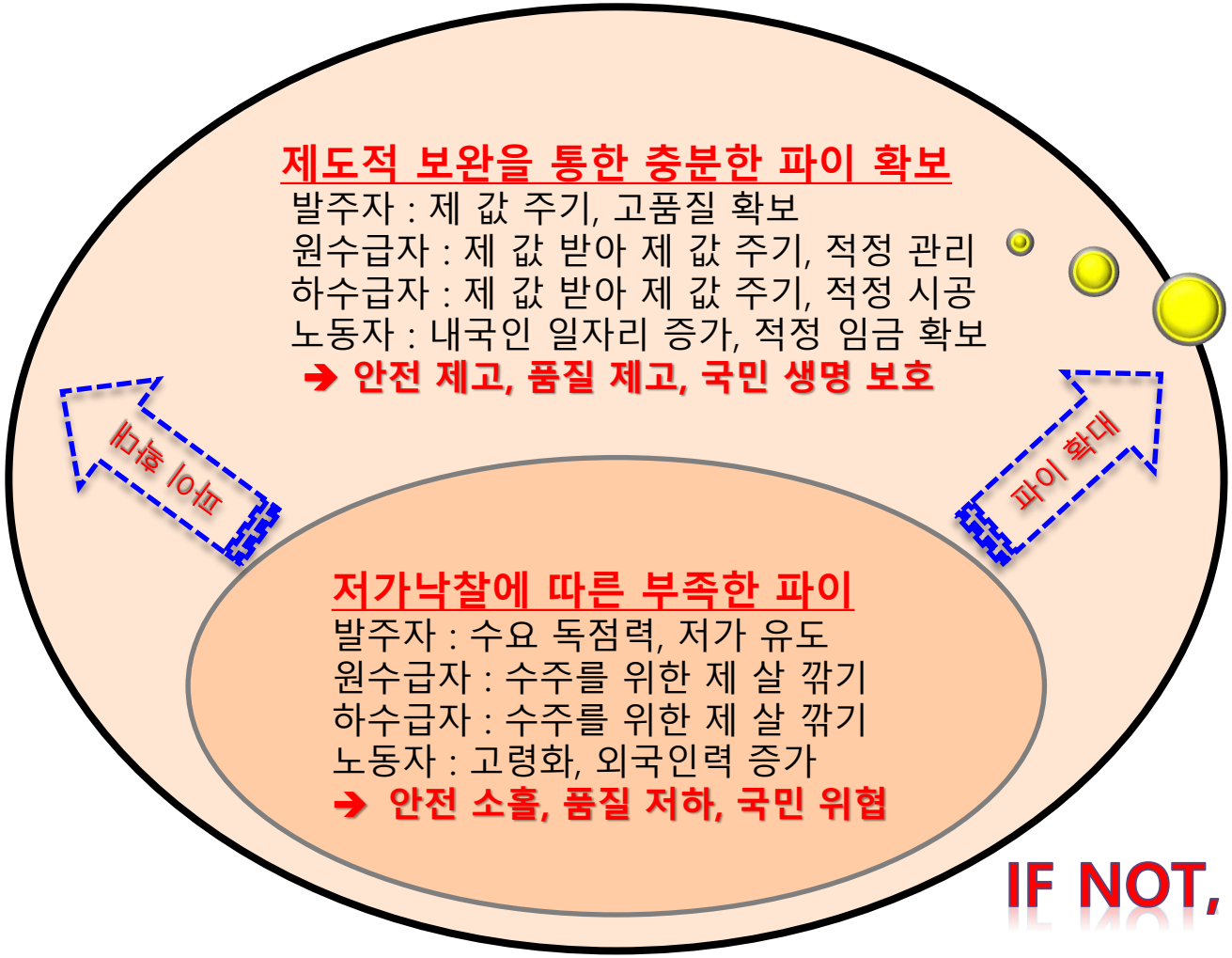

IF NOT, 국민 설득 불가!!!

(일본) 반면교사
: 임금 삭감 억제장치 부재 ➔ 배달사고 만연

- 일본 : 설계노무단가 인상 ➔ 건설업체 수익률 상승, 상용(실제)임금 제자리
  ➔ 인상분을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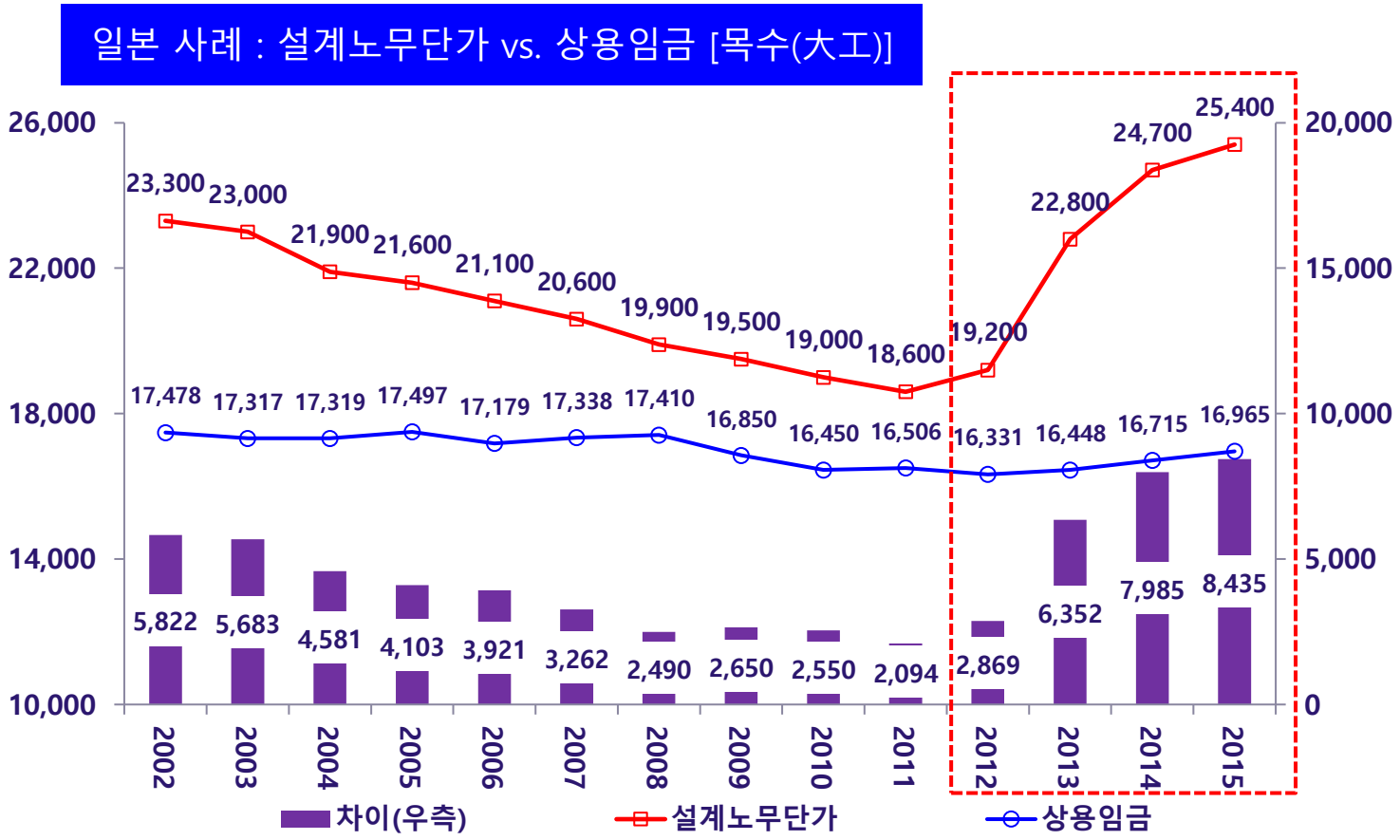

자료 : 신영철(2017), 적정임금제 도입 및 직접시공체계 확립방안, 적정임금제 도입·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조

3. 해법 모색 : 적정공사비 확보

‘안전’은 ‘시공’과 따로 있지 않아

정상적 시공 여건 조성부터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공감대 및 실효성

주문생산방식+도급구조 ➔ '노무비 절감 유형' 중요
➔ 구매자의 비용, 생산자의 수입, 낙찰자 선정 방법 등 규정

- (발주자 입장) '낮은 가격'으로 구매 희망, 하지만 생애주기비용(LCC) 증가 우려
  - 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생산자를 선정
  - 구매비용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입찰자 선정 ➔ 최저가낙찰제, LCC 증가 부작용 우려

- (입찰자 입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 희망,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 우려
  - 건설생산물 낙찰 및 계약 시점에서 노무비 상한선 결정 ➔ 받을 수 있는 임금 규정
  - 입찰자는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 존재 ➔ 저가 덤핑입찰
  - 저가 덤핑수주 경쟁 시 공사비 부족 ➔ 임금지불능력 부족, 부실시공, LCC 증가

- (가격경쟁) 임금 삭감으로 노무비 저하
  - 저임금 저숙련자 특히,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

  ➔ **'임금 하한선 설정'**을 통한 **'억제'** 필요

  (미국) 건설업 prevailing wage 도입(연방, 1931)
  ➔ 대공황 직전, 중국인 등으로부터 보호
  (독일) 건설업 직종별 최저임금 도입(1997)
  ➔ EU 통합 이후 동유럽인으로부터 보호

- (기술경쟁) 노무량 절감으로 노무비 저하
  - 공법 개선, 소재 개발, 공정관리기법 개발 등의 기술개발 유도

  ➔ **'엄격한 기술심사'**를 통한 **'촉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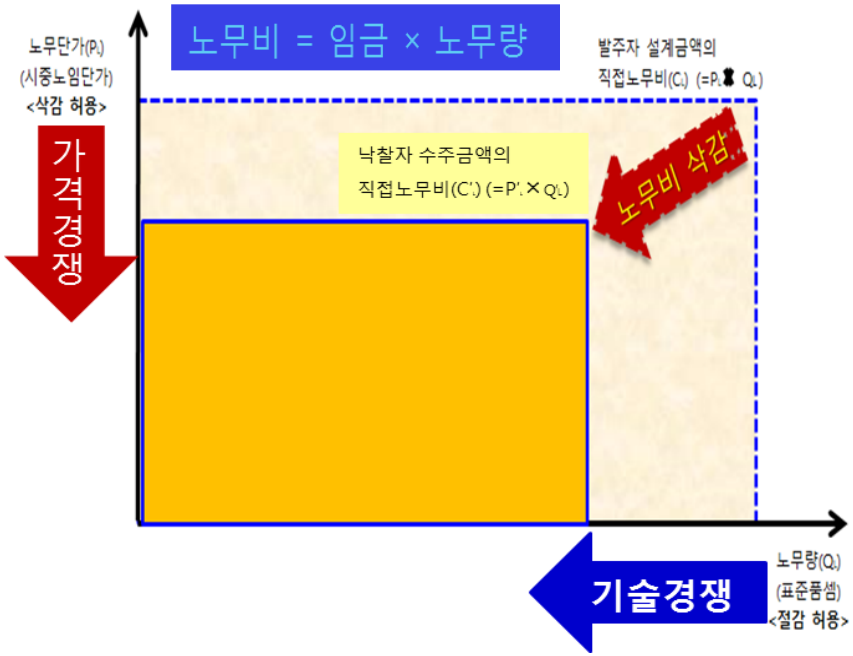

현행 비정상적인 악순환 구조 (기술심사 미흡)
: 근거 없는 임금 및 노무량 삭감 ➔ 편법 동원 및 폐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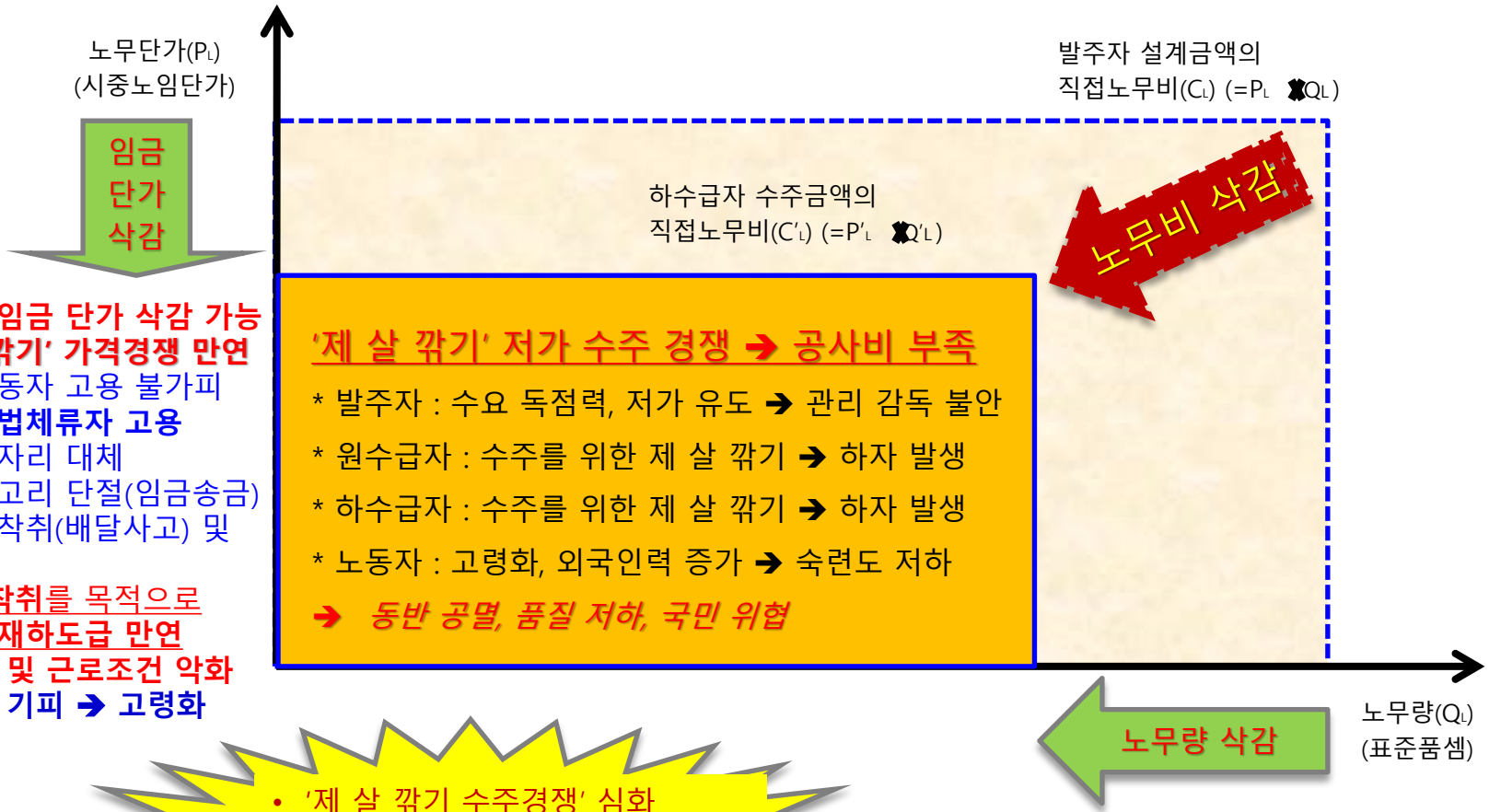

- **불합리한 임금 단가 삭감 가능**
  ➔ '제 살 깎기' 가격경쟁 만연
- 저임금 노동자 고용 불가피
- **저숙련 불법체류자 고용**
- 내국인 일자리 대체
- 내수진작 고리 단절(임금송금)
- 임금 중간착취(배달사고) 및 체불
- **임금중간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재하도급 만연**
- **소득 감소 및 근로조건 악화**
  ➔ 청년층 기피 ➔ 고령화

- '제 살 깎기 수주경쟁' 심화
  ➔ 젊은 층 진입 기피, 고령화,
  일자리 감소, 외국인력에게 대체
  산재 증가, 품질 저하
  ➔ 건설산업 미래 불투명

- **근거 없는 노무량 삭감 가능**
  ➔ 합리적 기술경쟁 부재
- **무리한 공기 단축** 불가피
- **작업팀 축소 및 장시간 노동** 불가피
- 안전 체조 기피, 안전 장구 착용 기피
- 품질 대신 **'빨리 빨리' 시공** 불가피

(미국) 적정공사비 확보 및 노동자까지 전달 ➔ 시공 정상화 ➔ 안전 정상화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메커니즘의 핵심 요소 : **노동자 임금에 대한 직접 규제**

공공공사 임금 규제에 대한 '작지만 큰 차이' : 한국 vs.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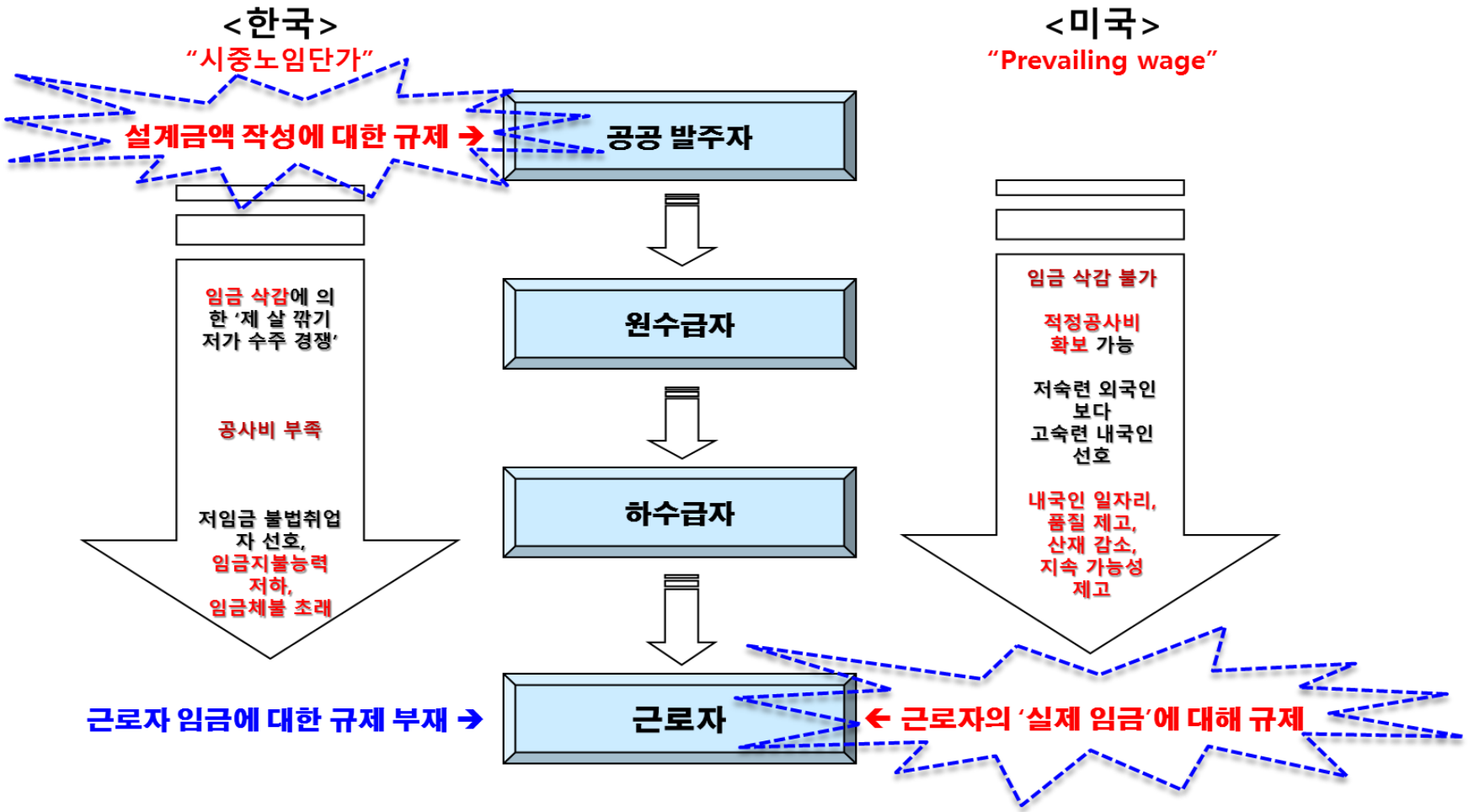

(미국) 위반 시 입찰 제한 등 ➔ 공공공사 현장의 철칙

- 적정 공사비의 확보 및 지급 사례 :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배달사고 억제 메커니즘 내재)
  - ✓ 건설공사가 발생하는 지역 사회와 노동자들을 지역 임금 이하로 입찰하는 타 지역의 건설업체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됨.
  - ✓ Prevailing Wage(이하 PW)는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지역별 직종별 임금 하한선**임. 연방차원의 Davis-Bacon Act(1931)(이하 DBA)는 연방정부의 재원이 포함된 2,000달러 초과하는 공공공사에 적용됨.
    (*1927년 뉴욕주 베테랑 병원 공사 계기, 앨라바마주 업체 수주 및 노동자 투입)
  - ✓ 공공발주자는 PW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입찰자는 공법개선을 통해 투입인력 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개인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PW 이상을 지급**해야 함.
  - ✓ 미국의 최저임금과는 상이함. 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의거해 시간당 7.25달러가 최저임금임.
  - ✓ **위반 시 미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지불 유보, 형사 처벌, 3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

(미국) 공사비 확보 ➔ 시공 정상화 ➔ 안전 정상화

- 미국 prevailing wage system 평가

"처음엔 반대했으나, **건설 구성원 모두가 pw 덕분에 먹고 산다**"(미국 대규모 건설업체 Turner사)

  - ✓ PW제도 평가 - 장점
    - **입찰경쟁에서 임금삭감 억제 ➔ 적정 공사비 확보*(거의 90% 이상)(파이의 확대)***
    - **공공발주자(국가 및 지자체 등)의 수요 독점적 시장지배력으로부터 공사비 보호**
    -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 여건 제공, 임금체불 억제 가능
    - 도제프로그램 활성화
    - **산업안전 제고 : 재해건수 50%, 사망사고 15% 감소 추정**
    - 건설생산물 품질 제고, 건설업체의 기술경쟁 촉진
    - **'동일임금이면 내국인 고용'**, 지역주민 고용, 지역업체 수주, 지역사회 활성화
    - **하수급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가능 : 경영여건 조성*(하수급자 힘만으로는 역부족)***
    - **장기적 생애주기비용(LCC) 절감**
  - ✓ PW제도 평가 - 단점
    - 직종 분류의 혼란, 편법 처리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

- PW제도 하에서의 **건설업체 간 경쟁 요소 : '가격경쟁 ➔ 기술경쟁'**
  - ✓ 노무비 삭감에 의한 가격경쟁은 불가능
  - ✓ **(기술경쟁 촉진) 공법 개선, 신소재 개발, 공정관리 기법 개발 등**

미국의 경험 "가격경쟁 여지를 막아야 비로소 기술경쟁 시작!!!"

(미국) '불합리한 예산절감' 대신 '견실한 공공공사' : **공공발주기관의 '사회적 소명' 또는 '품격'**

- 공공공사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기본 철학
  - 첫째, 공공공사는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므로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자에 의해 **가장 우수한 생산물**이 만들어져야 함.

    ➔ 유사한 공사 실적을 성실히 수행한 건설업체 선정, 고숙련노동자 참여 유도
  - 둘째, 공공공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합리한 예산 절감에 의해 저가 자재의 투입이나 근로조건의 악화 또는 임금의 삭감 등이 야기되어서는 안 됨**.

    ➔ 과도한 저가낙찰을 막고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지불
  - 셋째, 공공공사를 통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중산층의 육성**에 기여해야 함.

    ➔ 공공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 넷째, 예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발주 건수를 줄여서라도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자 함.

❖ 현장 노동자 인터뷰 : 공공공사 선호 ➔ 고임금, 체불 없음 ➔ 민간공사로 효과 전달

❖ 미국 사례 다큐멘터리 ***"상생의 조건 : 조주각씨 vs. Mr. 힐러"(KBS 시사기획 10, 2011.9.6)***

적정임금제+기술심사(공공발주기관으로서 검토)
➔ 기술력 보유 우수업체의 '제 값 수주' ➔ 건설 안전 효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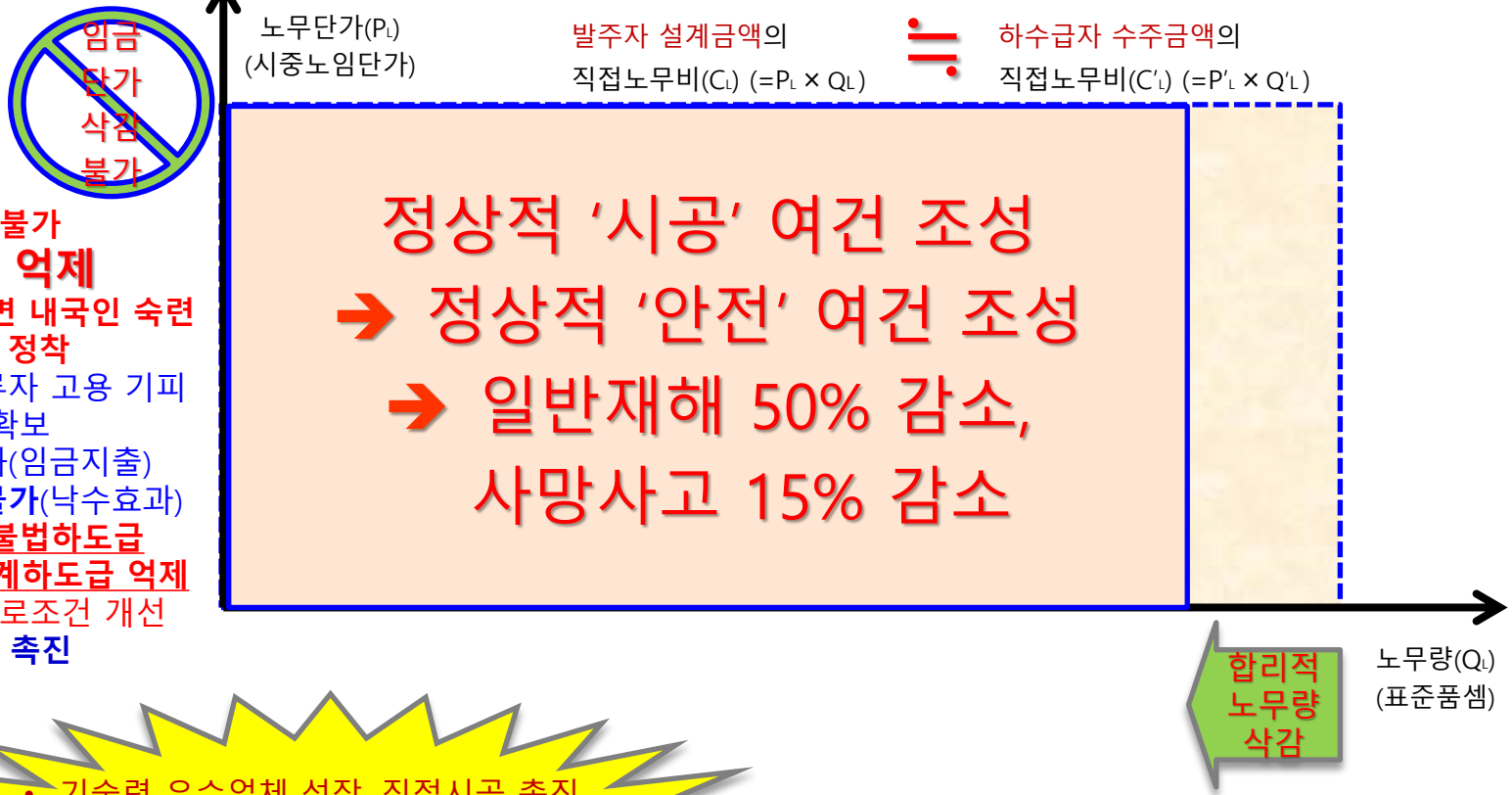

- **임금 단가 삭감 불가**
  ➔ 가격경쟁 억제
- **'같은 임금이라면 내국인 숙련 인력 고용' 관행 정착**
- 저숙련 불법체류자 고용 기피
- 내국인 일자리 확보
- 내수진작 활성화(임금지출)
- **임금중간착취 불가**(낙수효과)
- **임금 중간착취 불법하도급 불가능 ➔ 다단계하도급 억제**
- 소득 증가 및 근로조건 개선
  ➔ 청년층 진입 촉진

- 기술력 우수업체 성장, 직접시공 촉진
  ➔ 청년 실업 해소, 내국인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산재 감소, 품질 제고
  ➔ 숙련기반 확충, 지속 성장 가능
  ➔ 건설산업 정상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 노무량 삭감 허용 **➔ 기술경쟁 촉진**
  (공법 개선, 소재 개발, 공정관리 기법)
- 기술력 없는 부실업체 퇴출 **➔ 구조 조정**
- **적정 공기 확보** 가능
- 합리적 작업팀 투입 가능
- **건설인력 DB 반영(기술인력, 기능인력)**
- **품질 및 안전 중시 시공** 가능

(우리나라 추진 경위) 적정임금제 성공 가능성 확인 ➔ 일부 지자체 조례 제정 + 공공공사 시범사업 중

- (최초 공표)「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 '적정임금제 도입'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 (적정임금제 조례 제정 및 시범사업) 한국에서의 성공 가능성 시사
  - (서울시,'17.7 조례) **내국인 고용 95% 차지, 산재 감소**
  - (경기도,'19.1 조례) **내국인 우선 고용 확인**
  - (일자리위원회,'18~'19년 시범사업 20건) **내국인 고용 증가(약 7.1%)**, 임금 상승(약 6.8%), 안전* 및 **품질** 제고**
    *** 안전(사망만인율) : 시범사업 0‰ vs. 미시행현장 평균 2.01‰**
    ** 품질(건기법상 건설공사 부실벌점) : 시범사업 0점 vs. 미시행현장 평균 0.11점

- (법제화 추진) 법률 개정안 발의*('21년)
  - (법제화 추진)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1년)
    *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토위 김교흥 위원

- (일자리위원회 의결,'21.6.18.) 대상공사 너무 적어 추진 효과 지연
  - (시기) '23년 도입
  - (대상) **300억 이상 국가. 지자체 공사(건수 4% 불과), 민간공사 추후 검토**

(향후) 종합-전문 간 업역 규제 폐지 ➔ 직접 시공 및 고용 ➔ 도급단계 축소 + 내국인 일자리 증가 + 근로조건 개선 ➔ 안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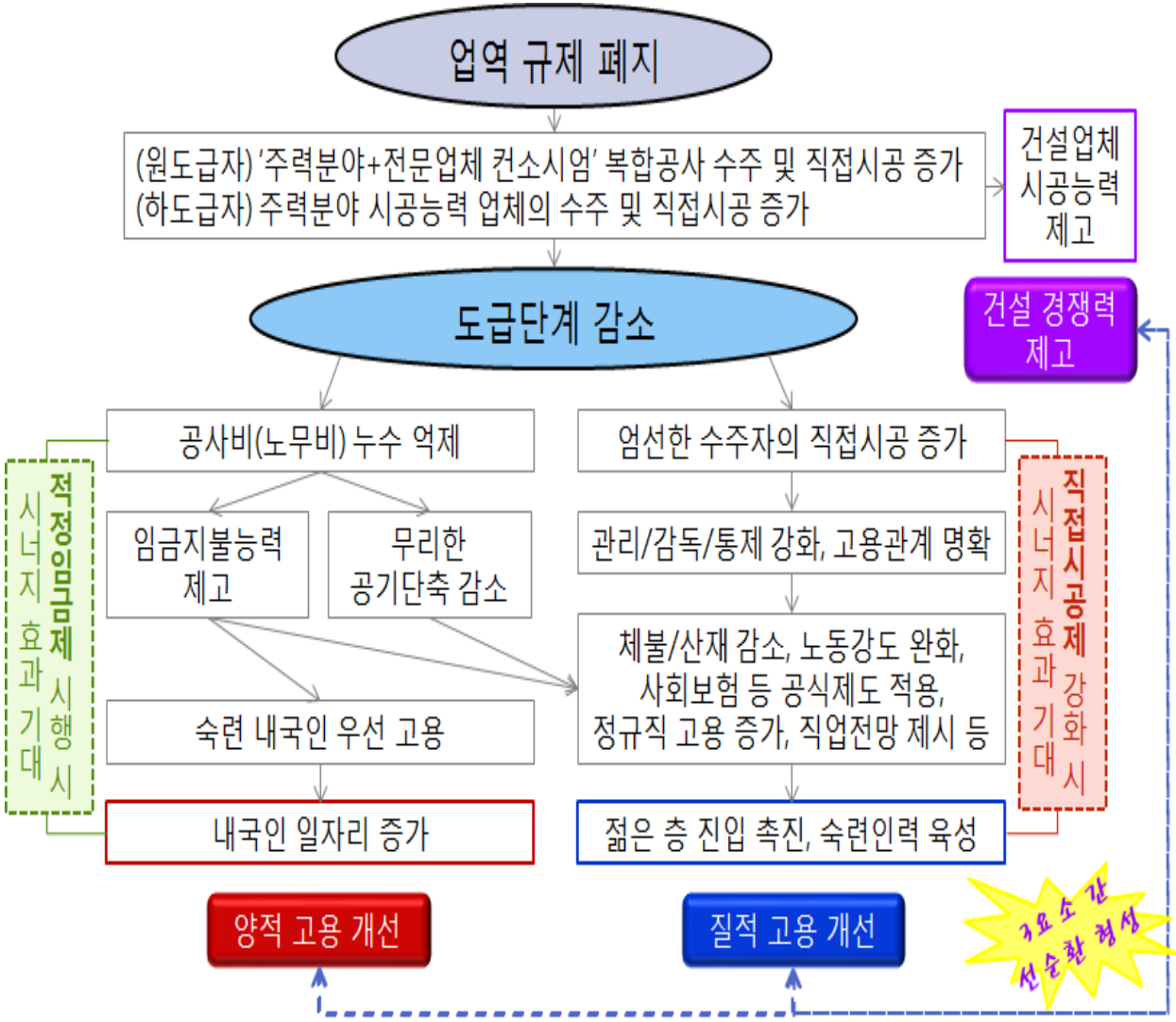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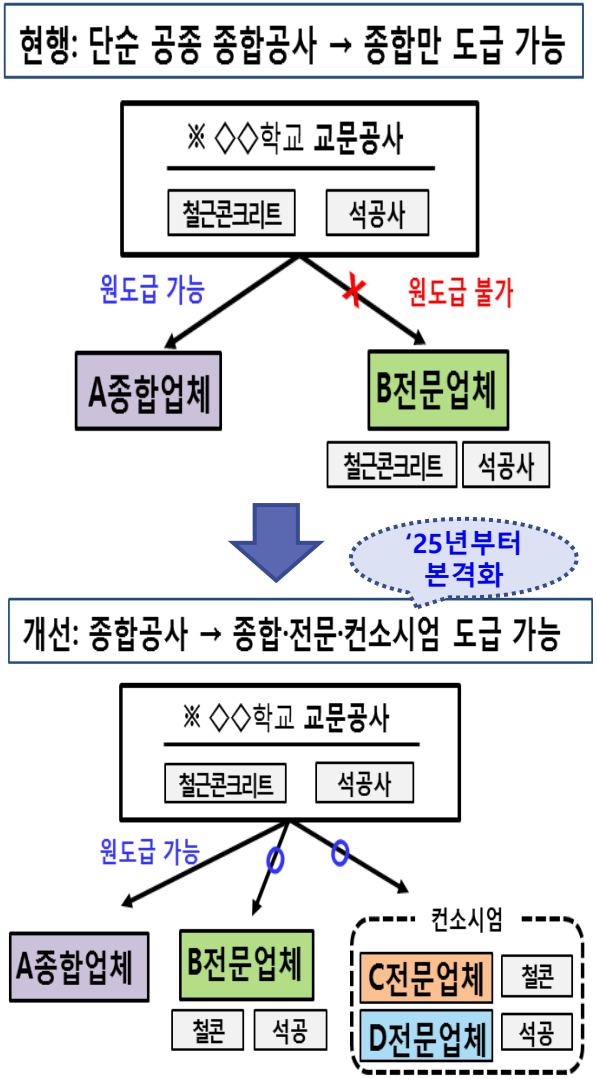

(서울시 실험) '적정임금제' 성공 가능성 시사

➔ '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 조례 제정, 특수계약조건 추가('17.7월)

- 서울시 시범사업 현장 상황 개요 : 전체 공사 및 투입 인원 등
  - 공사명칭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
  - 공사금액 : 예정가격 약 99억원, 낙찰금액 87억원, 주/부계약자 모두 낙찰률 약 87%
    (시범사업 현장) 발주자(100)-주계약자(87) & 부계약자(87)
    (유사 일반현장) 발주자(100)-원도급자(83)-하도급자(68=83×82%)-불법재하도급(54=68×80%)
  - 2018년 6월 현재 공정률은 약 50%,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

- 시행 중인 제도 및 행정수단
  - 주계약자 공동도급 :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 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화
  - 적정임금제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 포괄임금제 배제, 제반 수당 별도 지급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시스템 : 전자카드+근로일수/시간 ➔ 임금 산정
  - 대금e바로(노무비지급명세) : 발주자 직접 임금 지급

- 기능인력 투입 상황(골조 분야) : 외국인 없이 100% 내국인으로 구성 ('18.6 면담내용)
  - 대체로 하루 20명 투입 : 형틀목공 10명, 철근공 6명, 비계공 4~5명
  - 50대 중반에서 최고 68세(본 현장의 연령 제한은 70세 이하)

* ('18년 말까지) **총인원 5,405명=5,129명(내국인,95%)+276명(영주권 중국동포,5%)** (건설경제신문, '19.4.3)

(서울시 실험) 적정임금제 성과 ➔ 제도화의 밑거름
: 내국인 일자리, 품질 및 **안전 제고**, 청년층 진입 여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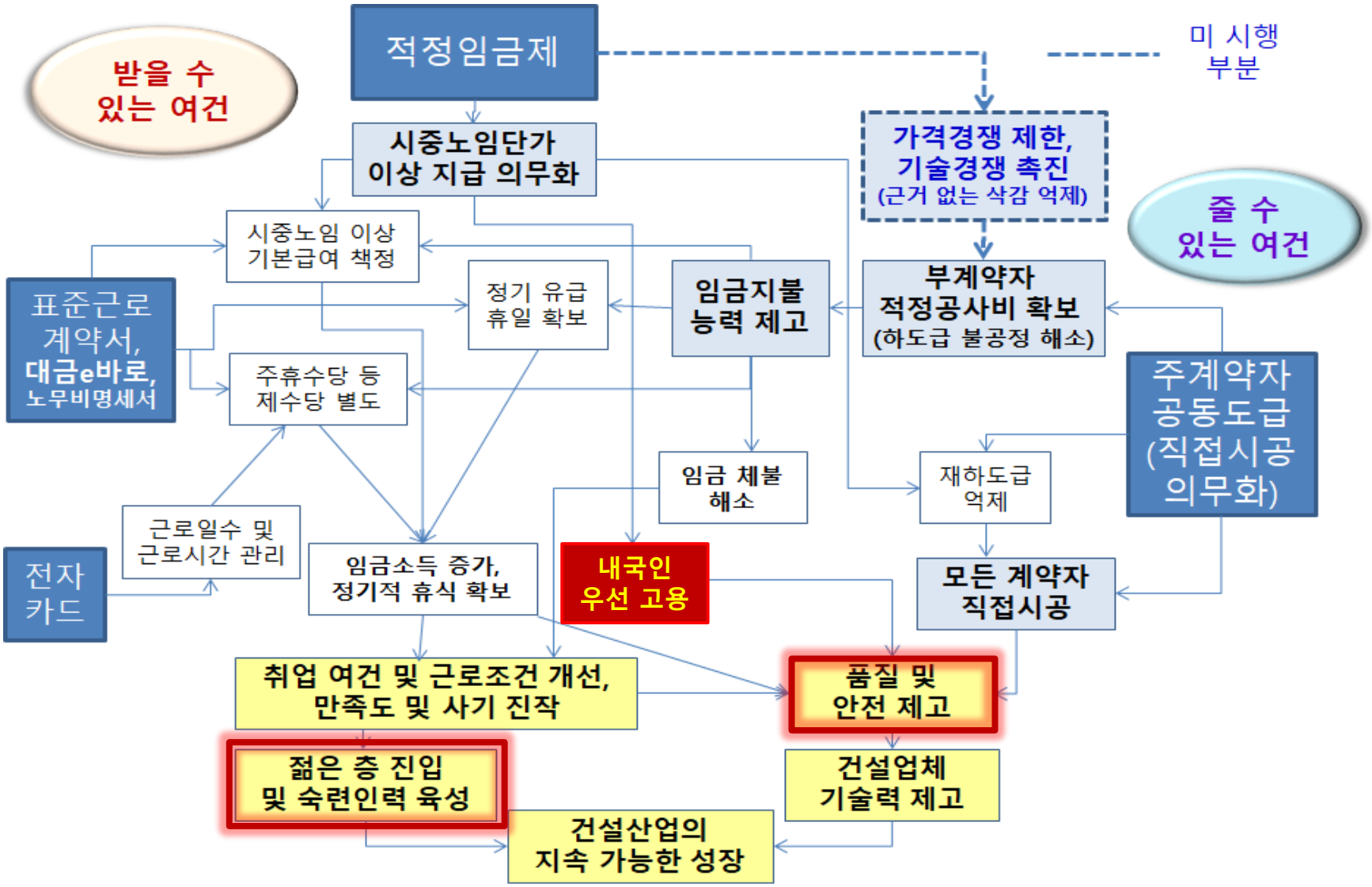

(서울시) 형틀목공 반장 면담('18.6.4)
: 중간관리직 고용, 임금

- 본인 소개 및 근로조건 개요
  - ✓ 58세, 형틀목공으로서 30년 경력, 기본급여 25만원(임금 성격)
  - ✓ 15명의 내국인 투입(50대 중반 ~ 69세), 숙련도 높아 생산성 우수
  - ✓ 적정임금제 시행 ➔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 내국인 우선 고용
- 표준근로계약서 ➔ 포괄임금제 배제 ➔ 임금 소득 증가
  - ✓ 월평균 25일 근무, 주휴수당 월 4회 수령, 연장근로수당 별도 수령
  - ✓ 임금 체불 없음
- 만족도 증가 ➔ '성심 성의껏' 시공 ➔ 품질 및 안전 개선
  - ✓ (만족도 증가) 다른 현장에서는 받아본 적 없는 '사람 대접'
  - ✓ (시공 태도 변화) 정성을 다해 시공, 생산성도 높아, '물량단위 성과급' 없어
  - ✓ (성과) 품질 및 **안전 개선**, 하자 감소 ➔ 결국 사업주와 발주자에게도 이익

"10년 전부터 이런 대접 받았으면, 지금처럼 고령화 되지 않았을 것"

‘건설안전 정상화’를 위한 ‘적정임금제’의 효과적 추진 방안

➔ 전문건설사 위상 재정립(직접시공, 고용, 품질, 안전의 주체)

- (기대효과)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 내국인 고용, 도급단계 축소 등 ➔ 산업안전 효과
  - (내국인 우선 고용) ‘같은 임금을 줄 바에는 내국인 우선 고용’ 관행 확산
  - (다단계 하도급 해소) 임금단가 삭감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하도급 유인 상실
  - **(산업안전 노력의 성과 가시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금껏 시도하지 못했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을 통한 ‘시공 정상화 ➔ 안전 정상화’ 여건 조성** ➔ 무리한 공기단축 예방, 제반 안전 규정 준수 여건 조성 ➔ **안전제고 노력 성과 가시화**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적용 확대)** 법 개정과 별도로 적정임금제 확대 추진
  - (대상)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한국판뉴딜사업, 예타면제사업 등
  - (‘21년~) 적정임금제 법 개정 이전, 해당 기관 공사 발주 또는 해당 사업 발주 시 적용
  - **(방법) 지자체 조례 제정, 기재부 특례 인정**
- **(법 개정으로 일반화)** 적정임금제 법 개정 완료, ‘23년 도입 이후 조기 확대 필요(안)
  - (‘23년~) 국가. 지자체 외에 ‘공공기관’ 포함,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확대 적용
  - (‘25년) 공공 10억원 이상, 민간 100억원 이상 적용
  - (‘27년) 모든 공공공사, 10억원 이상 민간공사 확대 적용 ➔ **(‘30년) 모든 건설공사**

그 동안 '놓치고 있던 것',,,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산업안전보건 노력을 기울이면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 고용, 품질, 안전의 주체라는

전문건설사 본연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건설현장' 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역할과 안전역량 확보 방안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역할, 운용 현황, 개선점 및 안전역량 확보 방안)

2022. 7 .4

유형수, 골조소장연합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과대학원 건축공학석사과정

목 차

1.서론

1-1.연구배경 과 목적

1-2.연구의 범위 및 방법

2.전문건설업과 전문건설사의 이해

2-1.전문건설업의 개황

2-2.전문건설사 현장소장직의 역사

2-3.현하(現下)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고용형태와 관행적인 지휘 체계

2-4.전문건설업현장소장의 역할

2-5.전문건설업 현장소장의 업무

3.결론

3-1.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안전역량 확보 방안

3-2.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안전역량 확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

3-3.향후 연구과제

1.서론

1-1.연구배경 및 목적

(1)건설사업은 기업의 운영형태가 현장이라는 외부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의 CEO를 대리하여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현장소장이다.
(2)현장소장의 역량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무재해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3)전문건설업 면허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국내 건설산업은 외적 성장과 더불어 대형화, 다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전문적인 각 공종의 책임자인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역량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무재해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9개 전문공사업 중 대표적인 노동집약형 사업으로 시공의 숙련도와 난이도가 병행되는 철콘.콘크리트업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을 조사대상으로 최근 3년간 골조소장연합회 회원록에 등재되었던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이력서, 이메일 내용, 카톡, 친선 모임 등에서 채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업계에 종사하게 된 동기, 학력, 자격증 취득 여부, 기술 수첩 취득 여부, 근무 경력, 고교/대학 출신 계열 등을 참고 자료로 선정하였다.

1.서론

<표1. 전문건설사 현직 현장소장 정보 데이터>

표1. 전문건설사 현직 현장소장 정보 데이터

학력		
학력	인원	비율(%
대학원	3	1
대졸	30	10
고졸	267	89

경력		
근무년한	인원	비율(%)
40년	5	1.7
30년	150	50
20년	125	41.6
10년	20	6.7

연령		
연령대	인원	비율(%)
60대	10	3.3
50대	215	71.7
40대	60	20
30대	15	5

기술수첩보유		
급수	인원	비율(%)
특급	5	1.7
고급	20	6.65
중급	25	8.3
초급	40	13.3
무소지	210	70

고교/대학 출신계열구분		
계열	인원	비율(%)
이공계	105	35
인문계	155	51.7
기타	40	13.3

업계에 투신하게 된 동기		
투신 동기	인원	비율(%)
1.고교/대학때부터 선택한 일이다	30	10
2.건설회사 일반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투신 함	40	13.3
3.지인으로부터 권유	30	10
4.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직업으로 고착화 됨	200	66.7

2.전문건설업과 전문건설사의 이해

2-1. 전문건설업의 개황

<표2.전문건설업체 등록 분포 현황>

표2. 전문건설업체 등록 분포 현황

주력업종명		등록수	비율(%)
토공사		7,238	10.62
포장공사		4,427	6.5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395	2.04
실내건축공사		5,525	8.11
금속구조물참호온실공사		7,018	10.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17	1.49
철도궤도공사		41	0.6
철강구조물공사		682	1
수중공사		378	0.55
준설공사		25	0.03
승강기설치공사		252	0.37
삭도설치공사		9	0.013
도장공사		3,779	5.54
습식방수공사		2,994	4.39
석공사		3,389	4.97
조경석재공사		4,868	7.14
조경시설물공사		3,364	4.9
철근콘크리트공사		11,012	16.16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981	4.3
상하수도공사		7,710	11.3
합계	등록수	68,104	
	(업체수)	38,757	

자료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정보. 2022년 5월 등록분포현황

(1)전문건설업이란"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 " 이라고 정의한다.

(2)1976년 11월부터 시행되었고, 1999년에 등록제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름

(3)전문건설업 등록 수는 2009년에 61008개, 2010년에 61414개, 2011년에 60320개, 2022년 개정 후 전문건설업 종류는 29개 주력업종에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되었다. 2022년 5월 기준 68104개가 등록되어 있다. 국내 건설산업의 외적 성장과 더불어 대형화, 다양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2.전문건설업과 전문건설사의 이해

2-2.전문건설사 현장소장직의 역사

(1)제1차 중동건설 붐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귀국후 전문건설사 설립에 참여

(2)70년대 후반까지도 3x6합판 “반네루” 거푸집이 상가/주택시공에 주로 사용 됨

(3)전통적인 방식으로 집 짓기에 익숙한 목수 책임자들이

“세와 " 라는 이름으로 전문건설사 현장 소장 역할

(4)도제식 수련과정을 거쳐 경험적 현장소장들이 양성됨

2-3.현하(現下)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고용형태와 관행적인 지휘 체계

<참조 표3.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고용형태와 관행적인 지휘 체계>

(1)조사대상 전체 인원 300명의 약 60%가 회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됨. 전문건설사 현장소장들이 가장 바라는 바람직한 고용형태

(2)그림1에 대한 설명

(3)그림2에 대한 설명

(4)그림4에 대한 설명

(5)그림5에 대한 설명

표3.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고용형태와 관행적인 지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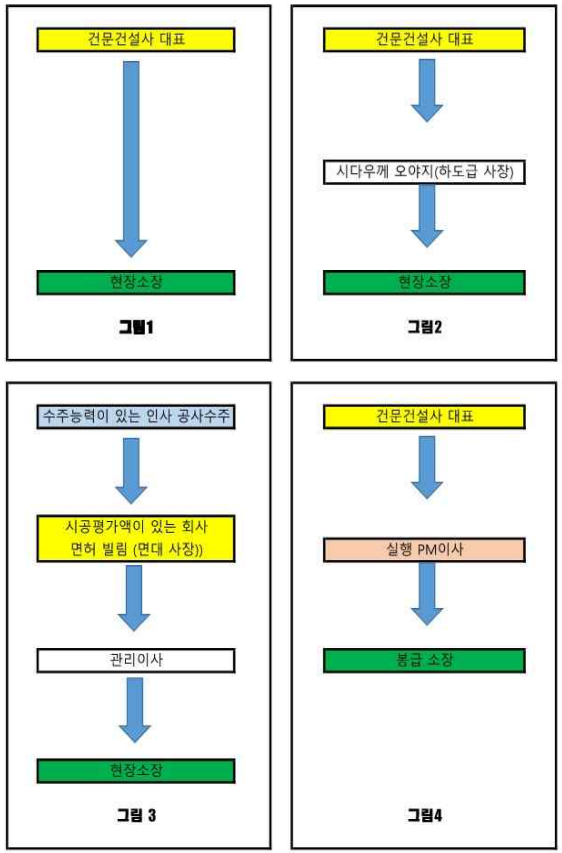

<참조 표3.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고용형태와 관행적인 지휘 체계>

2.전문건설업과 전문건설사의 이해

2-4.전문건설업 현장소장의 역할

(1) 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으로 회사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2) 대다수 전문건설사는 현장소장을 채용할 때 그의 소개와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채용이 완료되면 함께 근무할 현장 관리 직원은 현장소장이 그의 대부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으로 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3)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은 최일선 하도급이나 능률급 작업팀장들과 다년간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이다.

(4)건설노동조합이 현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직영으로 공사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를 유도하고 자발적으로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5)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2-5.전문건설업 현장소장의 업무

(1)원도급업체와의 원만한 관계 정립

(2)다양한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조정자 역할

(3)시공계획수립

(4)실행예산 편성 및 원가 관리

(5)자재관리

(6)공정관리 및 감독

(7)안전관리

3.결론

3-1.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안전역량 확보 방안

(1)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국내 건설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선진국 사회의 새로운 생활패턴은 건축물의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 스마트화, 저 탄소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2)전면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개방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3)표1과 같이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졸 학력(89%), 경력 30년(50%), 50대 연령대(71.7%),

기술 수첩 무소지(70%), 인문계 출신(51.7%),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직업으로 굳어지신 분(66.7%)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종합건설업 현장소장들이 대졸 출신의 엔지니어가 보편적이라면 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은 많은 데 비하여 엔지니어적인 공학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4)현장대리인과 실제 현장에서 지휘하는 현장소장을 동일 사람으로 일체화시켜야 한다.

(5)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보건총괄책임자 직무교육을 무조건 교육장에서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관리해야 한다.

컴퓨터를 켜 놓고 현장에서 대리케 할 수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당연히 교육에 참석할 때의 신분보장과 불이익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6)기술 수첩을 소지하지 못하고 현장 소장직을 맡은 분들에 대하여 별도의 위탁교육을 통하여

엔지니어적인 소양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전문적인 공학교육을 이수하신 젊은 분들이 전문건설사에 수혈되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발생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3.결론

3-2.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안전역량 확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1

(1). 견적서에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별도 안전 시설비를 견적 항목에 신설해야 한다. 특기사방서나 현장설명서에“무엇 포함”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고 소액이라도 안전관리 행위를 해야 하는 세부 항목에는 반드시 안전 시설비를 삽입하자.

2). 공사계약서 간접비 품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0.2~0.4% 책정되어 있다. 100억 기준 0.4%이면 4,000만 원이다.
(참고: 표4.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 샘플)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간접공사비 견적에
산업안전 관리비로 5% 정도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분	항목	소요금액
1	안전관리자 선임시 급여 (월 550만원)	6,600만원
2	안전설치 담당자 선임 (월 450만원)	5,400만원
3	보조인원 2인 (월400만원x2인x12개월)	9,600만원
4	각종신호수 투입 (지게차,레미콘,화물차,갱폼) 4인x15만원x25일x 18개월	2억 7,000만원
5	장구류 (안전모,안전화,각반, 안전대)	6,000만원
	합계	5억 4천 6백 만원 예상

<표5. 실제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기준 : 철근콘크리트 100억 공사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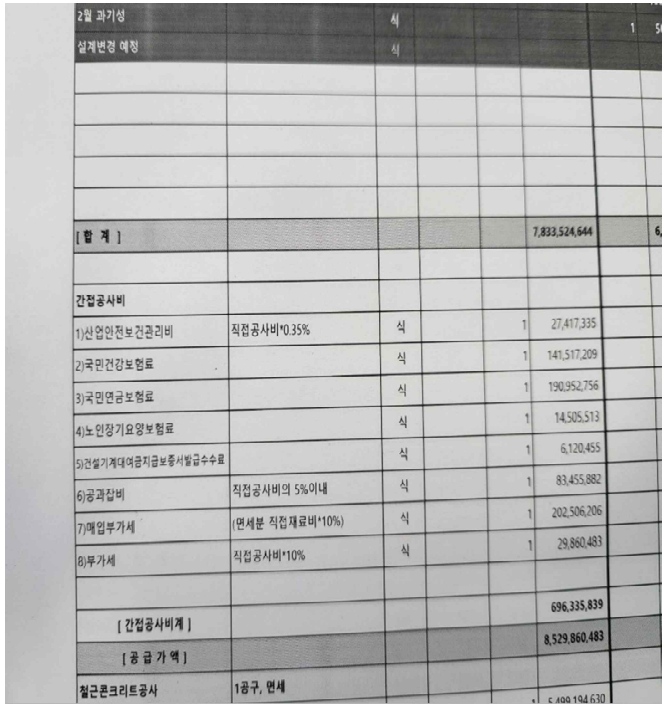

2월 과기성		식			1
설계변경 예정		식			
[합 계]				7,833,524,644	
간접공사비					
1)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접공사비*0.35%	식	1	27,417,335	
2)국민건강보험료		식	1	141,517,209	
3)국민연금보험료		식	1	190,952,756	
4)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식	1	14,505,513	
5)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식	1	6,120,455	
6)공과잡비	직접공사비의 5%이내	식	1	83,455,882	
7)매입부가세	(면세분 직접재료비*10%)	식	1	202,506,206	
8)부가세	직접공사비*10%	식	1	29,860,483	
[간접공사비계]				696,335,839	
[공 급 가 액]				8,529,860,483	
철근콘크리트공사	1공구, 면세				

<표4.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 샘플>

3.결론

3-2.전문건설사 현장소장의 안전역량 확보를 보완하기 위한 제안-2

3) 안전 관리비를 다른 곳에 유용하는 행위는 제도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4) 공사 관련 관리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시 인센티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5) 안전 관리비 항목 내 안전 시설비를 공정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자재나

인력투입 수량을 산정하여 검토한 이후에 실제 그대로 시공하도록 관리하자.

6) 시공계획서와 안전 계획서를 견적 초기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 그대로 지켜지도록 감독 기 능을 강화하자.

새로운 공법의 신기술을 이용한 자재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며, 구식자재라고 나쁜 것 이 아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보유한 자재를 최대한 활용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끔 하자.

7).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실제 작업장에서 투입 전에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3-3.향후 연구과제

전문건설업체 현장 소장들은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향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여 엔지니어적인 공학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젊은 공학도들이 마음 놓고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원과 연구를 지속해야 하겠다.

Thank You

건설공사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2022. 7. 4

홍 성 호/선임연구위원/미래전략연구실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Contents

Ⅰ. 협력적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의미

Ⅱ.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Ⅳ.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Ⅴ. 협력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추가 제언

Ⅰ 협력적 안전관리 중요성과 의미 : 도급사업에서 원·하수급자 안전책무

도급사업에서 원수급자의 안전책무 강화와 함께 사업주로서 하수급자의 안전책무도 강조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와 함께 관계수급인이 사업주로서 의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 규정

〈건설현장 원·하수급인 안전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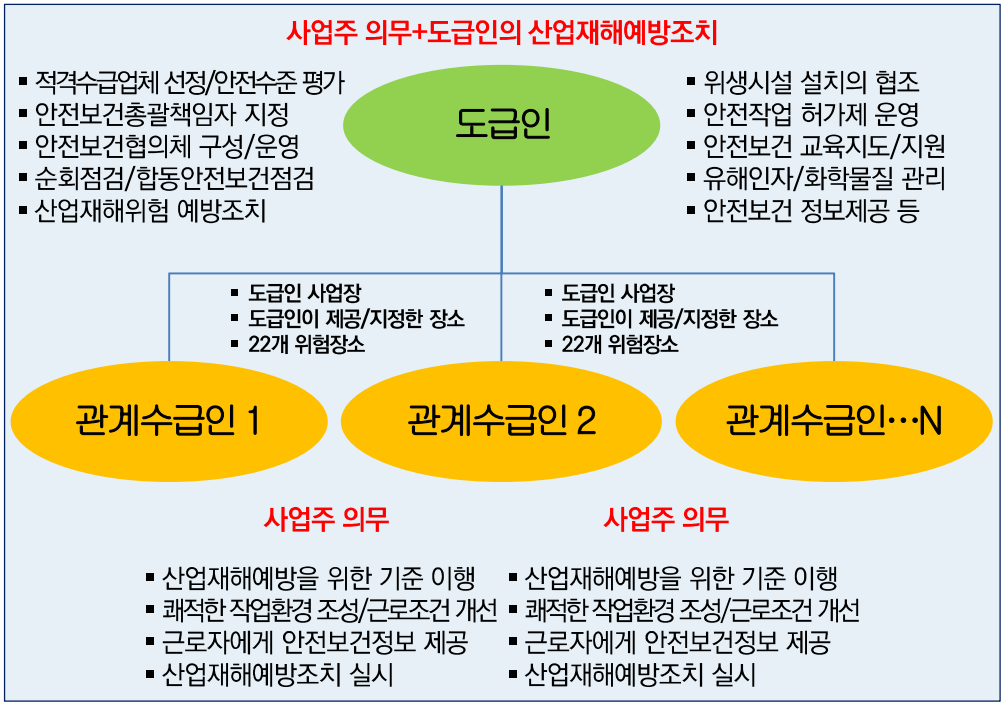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주인 원/하수급자 모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사망1인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벌금)**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이행, 관계 법령의 관리상 조치

〈건설현장 원·하수급인 안전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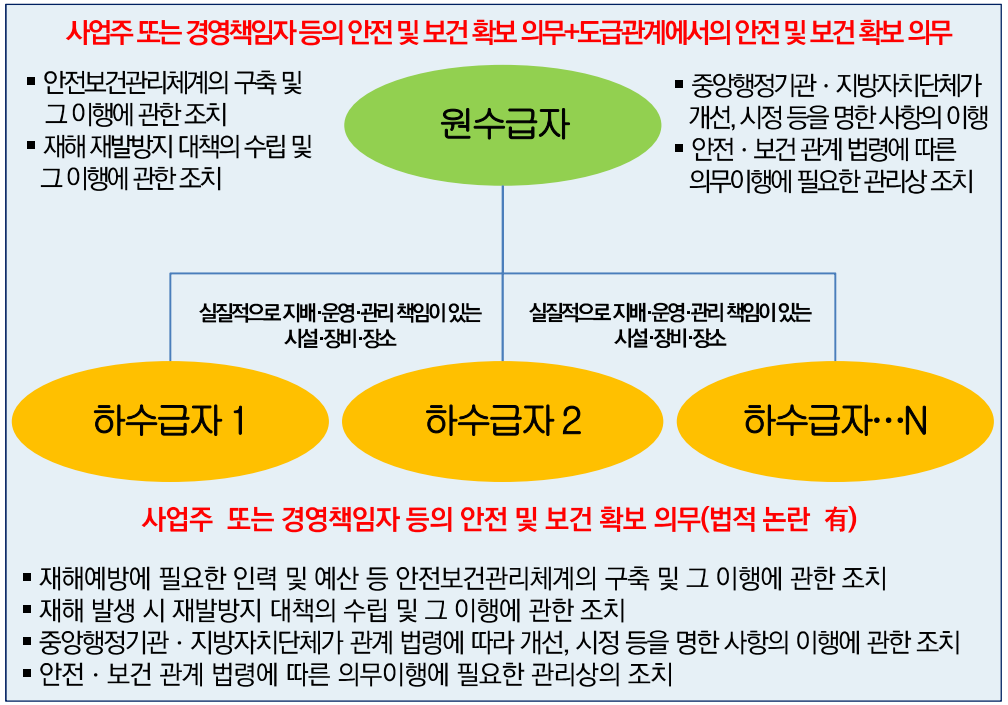

To-Be

하도급자 안전책무 미비 안전관리는 원수급자의 전유물	하도급자 안전책무 확대 안전관리는 원하수급자 공동업무
개인보호구 지급 등 소극적/사후적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기술에 기반한 적극적/선제적 안전관리
원수급자에 의존하는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안전관리	책임의식과 안전역량에 기반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공기/비용 측면의 경제적 동반자	경제적 동반자를 넘어서 안전동반자
원수급자의 징계(업체선정) 중심 하수급자 관리	원수급자의 지원 중심 하수급자 관리
하도급 안전관리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후려치기	하도급 안전관리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제값주기

건설현장의 협력적 안전관리

협력적 안전관리라 함은 원수급자, 하수급자, 근로자, 장비임대업체 등 건설현장 참여 주체 모두가 상호존중과 자율에 기반하여 재해예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문제의 해결, 자원의 교환 등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안전관리체계

① 총괄/안전관리 주도, 협력의 구심점(원수급자) 필요, ② Top-Down 안전관리(원수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과 Bottom-Up 안전관리(하수급자의 책임의식과 자율적 안전관리)가 상호 균형을 이룰 때 안전수준 향상

협력적 안전관리 중요성과 의미 : 기본원칙과 4대 요소

기본원칙은 안전책임=권한=역할=비용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4대 요소가 절대 필요

협력적 안전관리 프레임과 성공적 이행을 위한 4대 요소

기본원칙: 안전책임=권한=역할=비용

원하수급자가 갖는 안전책임과 권한에 따라 역할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의미

③ 재정적·관리 지원 프로그램 강화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 관리/지원

② 안전책임/권한/역할에 상응하는 비용의 합리적 분담

체계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협력사 관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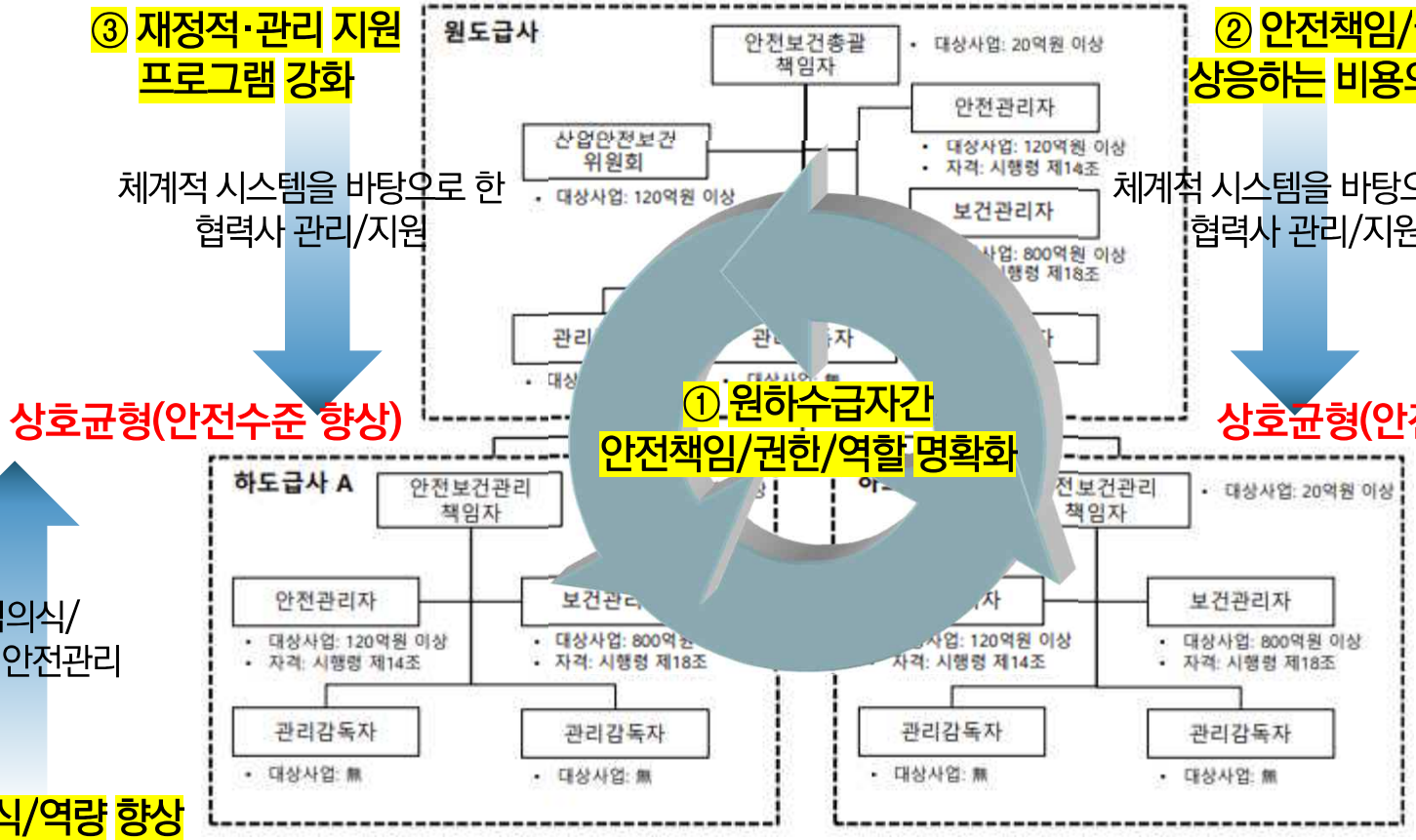

상호균형(안전수준 향상)

상호균형(안전수준 향상)

책임의식/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의식/ 자율적 안전관리

④ 안전의식/역량 향상

④ 안전의식/역량 향상

II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

원·하수급자간 안전책임/역할이 중복·모호하고, 일부공사 원수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책임 전가

원·하수급자간 안전책임/역할 중복 및 모호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는 건설현장의 속성상 이들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상태**
  - 산안법/중처법에 정한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22개 위험장소(도급인/관계수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 중복)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듦

- **안전보건 책임범위 혼란, 도급인·관계수급인간 권한 갈등, 안전보건활동 미흡, 업무 중복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역할 한계 발생**
  - 동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위험성 평가 등의 업무를 도급인, 관계수급인이 모두 수행하여 비효율성 발생 소지 농후

〈원·하수급자의 안전책임/역할 중복 및 모호로 인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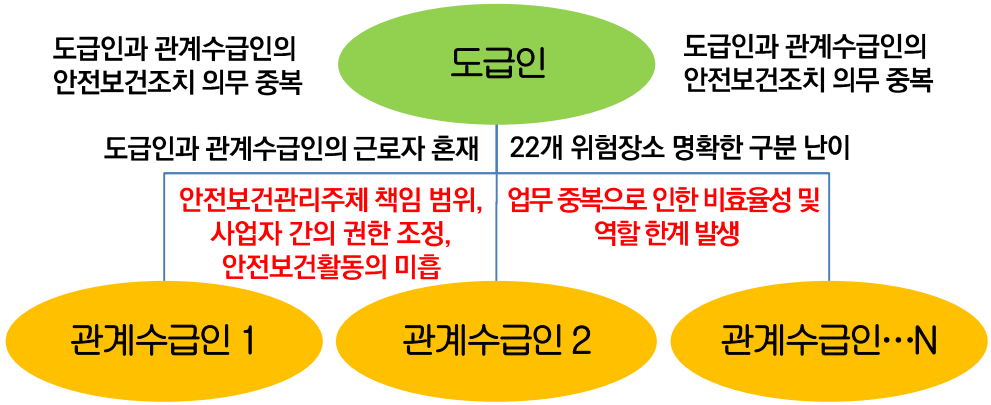

하수급자에게 안전관리/안전사고 책임 전가

- **건산법 제34조의8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 또는 현장관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계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는 하수급자 책임으로 전액 보상, 원수급자가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물의 하수급자 전가 등

- **서울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이 여전히 많은 상태**
  - 최근 2년간 서울시 현장점검 94개 현장 중 32개 현장(34%)에서 안전관리/안전사고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하도급 부당특약 발생

〈하수급자에게 안전관리 책임 전가(부당특약) 현황〉

전체	20년 上	20년 下	21년 上	21년 下	합계
하수급자 안전사고 책임	13개 현장	3개 현장	5개 현장	11개 현장	32개 현장 (34%)
원수급자 안전사고 책임	13개 현장	18개 현장	18개 현장	13개 현장	62개 현장 (66%)
소계	26개 현장	21개 현장	23개 현장	24개 현장	94개 현장 (100%)

〈자료 : 서울시, 하도급 실태 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20~21년〉

II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비용의 부담

하수급자의 안전책임·역할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원·하수급자간 안전관리비 분담은 불합리

원수급자의 하수급자 안전관리비 계상은 임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0조〉

제20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하도급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원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지급에 관한 불만족 증가

하도급 안전관리비, 원청사 맘대로 제각각 '혼선'

류승훈 기자 | 승인 2018.08.20 07:05 | 댓글 0

법정기준 원청사에게만 적용 원청은 하청사에 적용 안해 안전기준 업체별로 다르고 안전관리비도 입맛대로 책정 하청사들 비용부족 등 허덕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A전문건설사는 한 대형건설사와 약 150억원에 아파트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안전관리비 7000여만원이 포함됐지만 안전관리자 중 1명을 A사가 선임하라는 원청의 요구에 인건비만 4000만원 넘게 지출이 예상된다.

최근 종합건설사들이 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 규정을 제각각 운영하고 있어 전문건설사들은 현장마다 다르게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련법령에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상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하도급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하도급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안전관리비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청이 보호구 구입 등 대부분의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공사 중에 발생하는 안전로프 설치 등 소소한 업무를 안전관리비로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마찰이 빈번한 상황이다.

또한, 하도급사에 안전관리비를 주더라도 법령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대상액(직접·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합산액)에 2% 내외의 요율을 곱해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수 종합건설사는 이 요율을 하도급공사에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대형사들은 적게는 0.3%에서 많아야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대상액이 통상 계약액의 8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앞서 사례로 든 A사는 약 0.6%로 인정받았고, 인건비를 뺀 3000여만원으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시설물 설치 등 업무를 1년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해야 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외에도 종합업체별 안전기준이 모두 달라 하도급사는 각각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법은 법대로 지키고 원청 기준도 지켜야 해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I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비용의 부담

하수급자 안전관리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그 수준도 안전책임·역할과 역량 향상에 비해 부족

원수급자의 하수급자 안전관리비 지급 관련

-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안전관리비를 실사용분 위주로 지급하여 자율 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부족하여 다른 비용항목을 전용**

〈원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지급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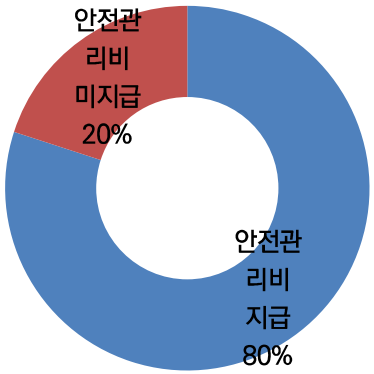

〈원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지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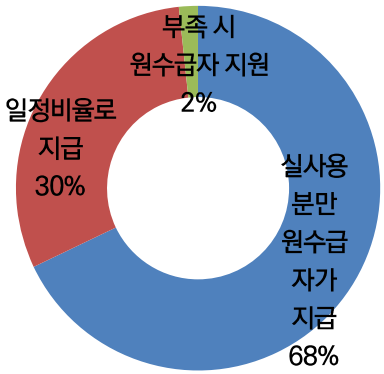

〈원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적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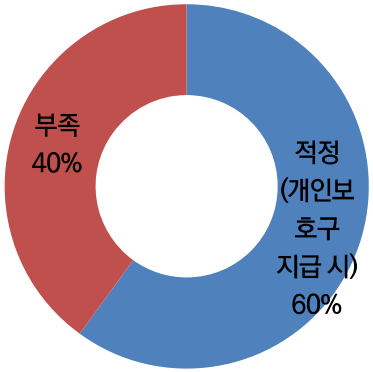

〈하수급자의 안전관리비 부족 시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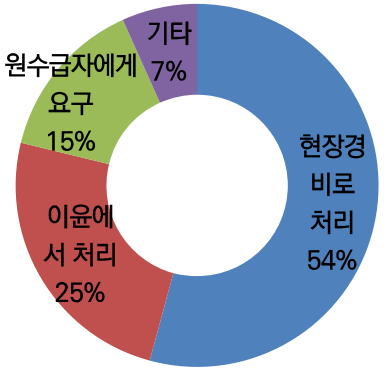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관리비 사용비율과 항목

- **하수급자 안전관리비(직접노무비의 0.77%)는 원수급자(1.88%)보다 과소**
- **하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개인보호구 지급에 주로 사용(소극적 안전관리)**

〈하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비율〉

구 분	18년	19년	20년
전체 원가의 %	0.33%	0.43%	0.28%
노무비의 %	0.93%	1.19%	0.72%
직접노무비의%	1.02%	1.30%	0.77%

〈하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

(단위 : 업체수, (%))

구 분	원도급	하도급
개인안전 보호구	227(40.3)	349(52.6)
안전관리자 인건비	133(23.6)	101(15.2)
안전시설비	101(17.9)	127(19.2)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67(11.9)	26(3.9)
안전진단비	17(3.0)	20(3.0)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9(1.6)	22(3.3)
기초안전보건교육비	9(1.6)	14(2.1)
안전기원체 등	0	2(0.3)
본사 사용비	0	2(0.3)
합계	563(100.0)	663(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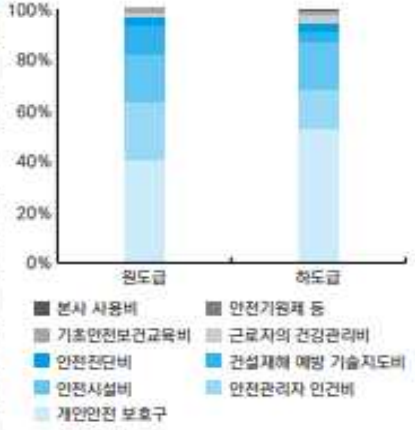

II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 원수급자의 관리적·재정적 지원

전반적으로 하수급자 안전관리 지원이 미흡하나,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 위주로 개선 움직임

고용부 3개 대형건설사 안전관리체계 특별감독 결과

올해 3명 숨진 현대건설 안전관리 부실…당국 "하청 지원 부족"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8.02 17:45 | 댓글 0

고용부, 감독 결과 발표…본사·건설현장 산안법 위반 301건 적발
25건 사법 조치, 274건에 과태료 5억6000만원

올해 들어 3명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특히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지원과 협력업체 노동자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현대건설 본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들어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사고로 숨지자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6월14일 진단에 착수했다. 2011년 이후 현대건설의 사고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본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은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도 적용됐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보건 예산의 대부분은 안전보건 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됐다.

현대건설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수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반영 비율이 낮은 데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산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소형 건설사의 하수급자 안전관리 지원 수준

- **중소형 건설사(원수급자)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수준은 "보통 이하"**
  - 토건 시공능력순위 300-600위 건설사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수준은 보통
  - 시공능력순위 601-900위 건설사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수준은 보통 이하
  - 2009년 조사된 결과인 불량에 비해 일부 향상된 수준

〈시공능력순위 300-600위 건설사(원수급자)의 협력사 안전관리지원 수준〉

구 분	2009년	2021년
협력업체 안전점검 지원	2.13	3.19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지원	1.50	3.12
협력업체 안전교육 지원	1.73	3.11

주: 리커르트 5점 척도(1점; 매우 불량, 5점: 매우 양호)

〈 시공능력순위 601-900위 건설사(원수급자)의 협력사 안전관리지원 수준 〉

구 분	2009년	2021년
협력업체 안전점검 지원	2.16	3.03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지원	1.65	2.94
협력업체 안전교육 지원	1.86	2.58

주: 리커르트 5점 척도(1점; 매우 불량, 5점: 매우 양호)

II 협력적 안전관리 실태 : 하수급자의 안전역량

하수급자 안전관리활동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자율적·선제적 안전관리 역량은 여전히 미흡

하수급자의 안전관리활동 : 형식적 실시, 인력 부족

〈하수급자 안전관리활동 실시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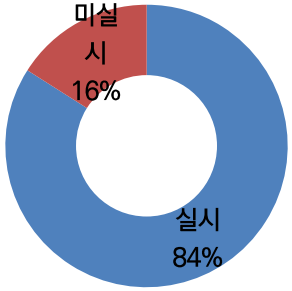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관리활동 실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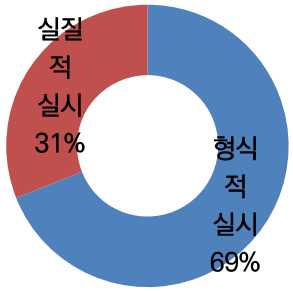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작업계획 작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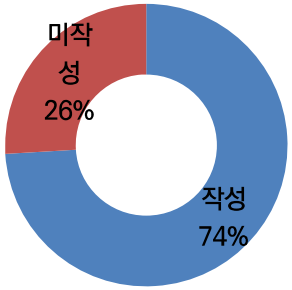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관리규정 보유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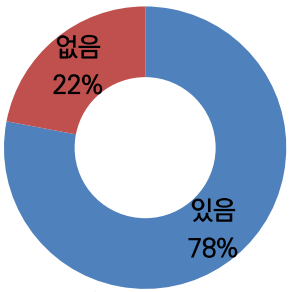

〈전문건설기업 안전관리자 보유수준〉

(단위 : 명)

전체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주택건설업	건축사사무소
30,898	11,738(38.0%)	4,525(14.6%)	226(0.7%)	62(0.2%)
	감리전문회사	측량업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사무소
	245(0.8%)	74(0.2%)	912(3.0%)	49(0.2%)
	안전진단 전문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	건설 관련 생산 및 제조업	기타
	334(1.1%)	113(0.4%)	119(0.4%)	12,501(40.5%)

하수급자 안전관리 수준: 보통 이하

〈하수급자 안전관리분야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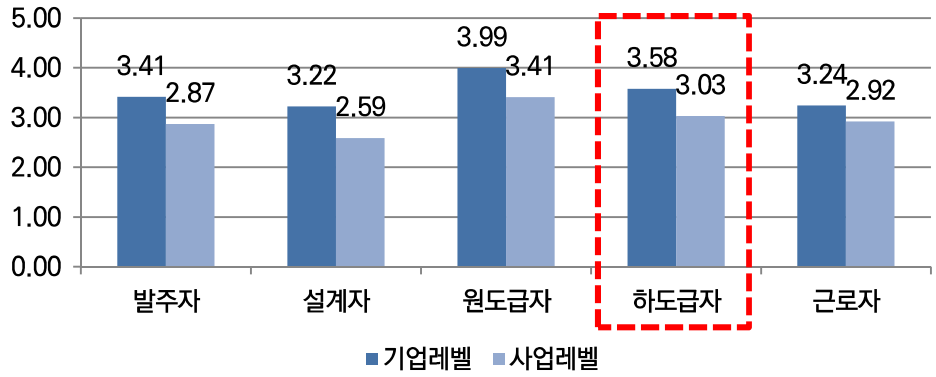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관리분야별 수준〉

구 분	점수(100점 만점)
Management Commitment	73.3
Policy	60.0
Roll and Responsibility	61.3
Risk Control	68.9
Plan and Procedure	65.9
Implement and Management	64.4
Monitoring and Measurement	68.1
Accreditation	55.6
Average	64.9

〈자료 : 이재윤 외 1인, "건설업 협력회사 안전수준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논문집, Vol.32, No.2, pp.78-84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

일본은 원·하수급자 산재방지대책 이행주체 혼란을 방지를 위해 하도급 입찰 시 실시자/부담자 구분 의무화

일본도 원하수급자간 산재방지대책 이행주체 혼란

〈일본 산업재해방지대책의 원·하수급자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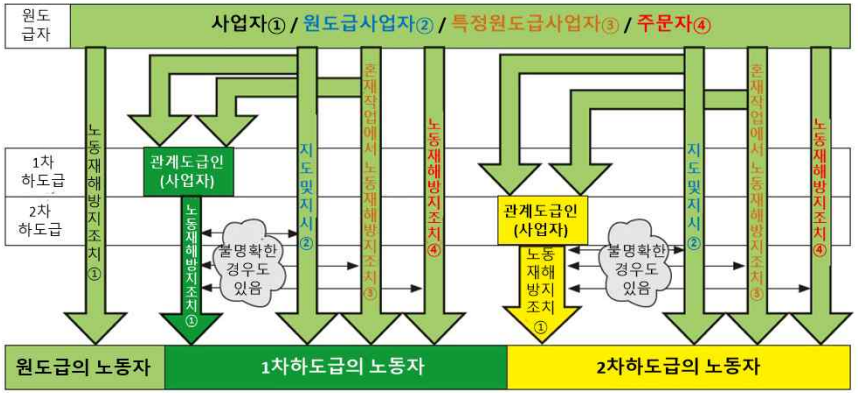

〈원·하수급자간 불명확한 산재방지대책 사례〉

[기자재 관련]

- 건설기기관계기재 (크레인, 출입금지조치재, 입간판 등)
- 추락, 낙하방지관계자재 (비계, 안전망 등)

주문자 ↔ 하도급사업자

[교육 관련]

- 현장에서의 강습회 등 (신규입장자교육, 건설종사자교육 등)
- 원도급사업자가 주최하는 안전대회에 참가

특정원도급사업자 ↔ 하도급사업자

[장치, 자격 관련]

- 개인용보호구 (보호구, 안전띠, 방진마스크, 보호안경 등)
- 기능강습 등의 자격획득자의 배치

원도급사업자 ↔ 하도급사업자

[모임 관련]

- 재해방지협의회에 참가
- 반장회의 설치, 운영

특정원도급사업자 ↔ 하도급사업자

하도급 입찰 시 산재방지대책 이행주체 명확히 구분

- **하도급 입찰 시 산재방지대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시 산재방지대책의 실시자/비용 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
  - 후생노동성 "원도급사업자에 의한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침", 국토교통성의 "건설업법령 준수 가이드라인 "

〈하도급 입찰 시 산재방지대책 이행주체 구분 표준모델(철근조립작업) 예시〉

別紙 3

鉄筋組立作業にかかる安全衛生経費の費目総括表

経費の費目	適用 ○	負担 元請	負担 区分 専門	経費の費目	適用 ○	負担 元請	負担 区分 専門
安全費（共通仮設費）				仮設費（共通仮設費）			
1 調査費用				⑨ 傾斜計			
① 埋設物調査試掘他				⑧ 沈下計			
2 交通規制に要する費用				5 避難用設備			
① ガードマン	○	○		① 避難誘導灯			
② 規制車				② 発破時の避難所			
③ クッションドラム				③ 避難用器具（空気呼吸器・携帯用照明・避難はしご・ロープ等）			
④ カラーコーン	○	○					
⑤ バリケード				6 作業環境			
⑥ 工事中表示板（内照式）				① 換気設備	○	○	
⑦ 回転灯				② 空気清浄設備（潜函）			
⑧ 規制表示看板				③ ガス抜き等の措置（ずい道）			
⑨ お願い看板				④ 各種環境測定器（酸素濃度他）	○	○	
				⑤ 排気管			
3 監視連絡等に要する費用				⑥ 圧力計（高圧室内）			
① 列車見張員等有資格者				⑦ 照明器具・電気設備	○	○	
② 誘導員				⑧ 熱中症対策設備	○	○	
③ 監視員				⑨ 給排水設備	○	○	
④ 作業指揮者				⑩ 休憩室・仮設便所	○	○	
⑤ 連絡員（潜水）等の配置				⑪ 快適職場設備等	○	○	
⑥ 構内電話				⑫ クレーン作業範囲規制装置	○	○	
⑦ 無線機（クレーン合図）	○	○					
⑧ 作業主任者の配置				7 昇降設備			
⑨ 安全衛生推進者の配置	○		○	① 坑内はしご道で巻き上げ装置との隔壁			
				② 階段			
4 安全衛生、注意喚起に要する費用				③ はしご道			
① 各種注意看板標識（立入禁止・開口部分）	○	○					
② 安全掲示板	○	○		8 火災防止			
③ 安全旗・衛生旗	○	○		① 消火器	○	○	
④ 安全衛生ワッペン・腕章	○	○		② 防炎シート	○	○	
⑤ ポスター	○	○					
⑥ のぼり・垂れ幕	○	○		9 倉庫、材料保管等に関する費用			
				① 火薬庫など			
5 保護具類							
① ヘルメット	○		○	10 その他			
② 保護めがね	○		○	① 重機移動用敷き鉄板	○	○	
③ 防じんマスク				② 鉄筋養生キャップ	○	○	
④ 耳栓				③ 各種治具	○		○
⑤ 安全帯	○		○	④ 単管、クランプ防護カバー	○	○	
⑥ 防振手袋				⑤ 仮設材運搬費	○	○	
⑦ 手袋（軍手・皮手・ゴム手）	○		○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비용 부담

일본은 원수급자 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도 동일한 안전위생경비 비목을 사용하도록 규정

일본 건설공사 안전위생경비 비목 예시

비용구분			주요 내용		세부 항목
직접 공사비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직접 필요한 안전설비(지정가설 및 참고도 등에 표시되어 있는 것)		비계		틀비계, 단관비계, 강관비계
			지보공		거푸집지보공, 교량가설지보공
			흙막이		시트파일
			흙막이 지보공		
			작업대		
간접 공사비	공통 가설비	안전비	준비비	조사비용	이설물조사시굴 등
			교통관리에 필요한 비용	교통규제에 필요한 비용	통제원, 규제차, 안전표지판, 바리케이트, 공사중표시판, 회전등, 규제표시간판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감시연락 등에 필요한 비용	열차파수원 등 유자격자, 유도원, 감시원, 작업지휘자, 연락원의 배치, 구내전화, 무전기, 작업주임자의 배치, 안전위생책임자의 배치
				안전의식, 주의환기에 필요한 비용	각종주의간판표식, 안전게시판
				보호구 비용	헬멧, 보호안경,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띠, 보호 장갑, 안전화, 방호복, 구명조끼
		가설비	안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추락낙하재해방지설비	난간, 개구부식생, 낙하방지망, 안전블록 등 각 위치 점검통로(지보공), 안전통로 등
				작업	롤링타워, 이동식작업대, 고소작업차
				공중재해에 필요한 비용	펜스, 건축공사낙하방지, 소음시트, 방음패널, 비계출입 게이트
				경보설비	산사태, 홍수 등의 경보시스템, 이상온도 자동경보장치, 벨, 사이렌 등의 경보장치(터널) 풍력계, 우량계, 차량계건설기기의 후방센서 등
				피난용설비	피난유도등, 발파시의 피난소, 피난용 기구(공기흡입기, 휴대용조명, 피난용사다리, 로프 등)
				작업환경	환기설비, 공기청정설비, 가스누출탐지설비(터널), 각종환경측정기(산소농도 등) 배기관, 압력계(고압실내), 조명기구, 일사병대책설비
				승강설비	갱내 사다리도로 철거장치와 격막, 계단
				화재방지	소화기, 방화시트
				기타	중기이동용 바닥철판
			영선비	창고, 재료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	화약고 등
			기타		
	현장관리비		병원위생대책비		건강진단(일반, 특수진단)
			안전훈련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특별교육, 각종자격취득을 위한 강습수험비용 피난, 구호, 소화훈련 등 신규입장자교육, 안전협의회, 안전대회, RST, CFT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 안전책임·권한·역할에 따른 비용 부담

일본은 안전위생경비 비목별 경비부담자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상향식으로 견적방식을 통해 비용 확정

Bottom-Up 방식의 안전위생경비 계상

- **하도급 입찰 시 제시된 산재방지대책 이행주체 구분에 따라 하수급자가 안전위생경비를 견적(충분한 견적기간 부여)하고 원수급자에게 제출**
- **하수급자 견적 안전위생경비는 발주자도 검토하여 최종 승인**

〈일본 하수급자 안전위생경비 견적 및 결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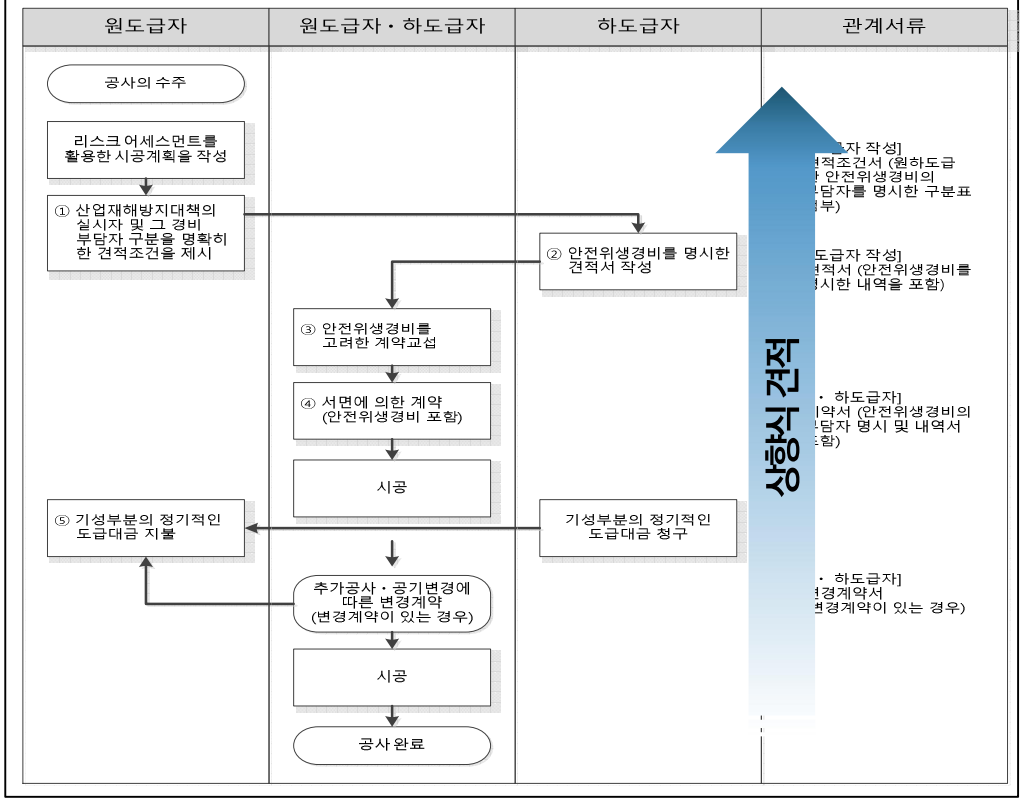

하수급자 안전위생경비 비목별 경비 부담자 예시

안전위생경비 비목			실시자		경비부담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접공사비	이동식크레인		○		○	
	비계		○		○	
안전비	감시연락	무전기(크레인 신호)	○		○	
	보호구류	보호헬멧		○		○
		안전띠		○		○
		안전구두		○		○
가설비	추락낙하 방지조치	안전그물	○		○	
		손잡이 등(구체)	○		○	
		출입금지 조치부재	○		○	
		출입금지조치설치		○		○
	승강설비	계단	○		○	
	기타	깔개용 철판	○		○	
		고리걸이용구	○		○	
교육훈련비		신규입장자교육 자료	○			○
		신규입장자교육 실시	○		○	
		신규입장자교육 수강		○		○
		이동식크레인운전자 배치	○		○	
		고리걸이강습수료자 배치		○		○
		⑥ 안전위생협력회 참가		○		○
기타		① 건강진단		○		○
		② 일사병대책		○		○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 원수급자의 관리적·재정적 지원

국내 일부 대형 건설사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등 하수급자 안전역량 향상 지원

현대건설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 확대 등 안전관리 총력

현대건설이 8월 9일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을 현장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으며, 기본과 원칙을 지켜 중대재해를 근절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내용 확대 ▲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및 선정 기준 강화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하여 안전 경영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내려지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일정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고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 개편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안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협력사 48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전관리비 선집행, 입찰 참여 가점 적용 등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활동을 시행합니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 시행 및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 편성

현대건설은 지난 7월부터 현장 준비 단계부터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지원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삼성건설의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삼성물산 "건설현장 안전 비용 대폭 늘린다"

전문건설신문 | 승인 2021.07.12 17:57 | 댓글 0

안전강화비 신규 편성…협력업체 안전관리비도 100% 선집행

삼성물산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편성하는 등 안전 관련 비용을 대폭 늘린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는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설 현장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정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인 안전강화비를 편성해 투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3.43%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안전관리비 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을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강화비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자체 판단으로 지출하면 삼성물산이 정산해 주는 개념이다.

삼성물산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도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줄 방침이다.

현장의 안전 제고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시행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득시 포상금도 지급한다.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도 지원한다.

Ⅲ 국내·외 협력적 안전관리 사례 : 하수급자의 안전역량

일본 후생성은 건설재해방지협회에 위탁하여 전문공사업자 자율 안전관리촉진과,지도력 향상사업 시행

일본 전문공사업자 안전관리활동 촉진사업

구분	항목
목적 및 방법	▪ 건설업 안전보건 경영시스템(COHMS)을바탕으로 전문공사업자에 맞는 표준모델 및 업종별 위험성·위해성 조사 매뉴얼을 개발하고 연수회, 설명회,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문공사업자용 코스모스를 정착시켜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 ▪ 미장공사업, 조경공사업, 기초공사업, 토공사업, 지붕공사업, 해체공사업, 전기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후생노동성이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에 2003년부터 위탁 실시 ▪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촉진사업과 석면노출방지 사업으로 구분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 촉진사업	▪ 업종별 위험성·위해성 조사 매뉴얼 개발 •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업종별 위원회 검토로 확정 • 전문공사업자 대표 대상 설명회 개최(연간 180회 실시) • 사업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업종별 위험성·위해성 조사 매뉴얼 배포 • 1회 설명회 개최 15-30 업체의 대표 참석 ▪ 안전보건 관리자 개별지도(연간 500 업체) 및 지도회 개최(연간 180회) • 위험성·위해성 조사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지도 • 팀장 대상 위험성·위험성 조사 매뉴얼 연수회 개최(연간 80회 실시) • 전문공사업자 팀장 대상 연수회 실시(연간 80회 실
석면 관련 전문공사업자 안전위생 지원대책 사업	▪ 해체공사 현장 대상 석면분진 지도원의 현장 패트롤(연간 470개 현장) ▪ 전기공사, 상하수도공사 업체의 석면에 관한 안전위생관리 지도

일본 중소규모 건설사 지도력 향상사업

구분	항목
목적 및 방법	▪ 중소 종합건설업자와 관련 하도급 업체의 안전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 ▪ 후생노동성이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에 위탁하여 실시 ▪ 전년도 도급순위 150위 이하의 종합건설업자 대상
사업내용	▪ 현장소장 연수회 개최(연간 80회 실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대상으로 우수현장 견학 등 교육 실시 ▪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대상 연수 실시(연간 47회 실시) • 현장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위험성·유해성 조사방법에 관한 연수를 연간 실시 ▪ 시범현장에 대한 개별지도(327개 현장) • 327개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위험성·위해성 조사 시범현장을 선정하고 전문가 방문을 통해 개별 지도 • 1개 현장 당 연간 5회 전문가 방문 ▪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위험성·유해성 조사 사례집 발간 •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시범현장 모범사례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고 중소 종합건설업자에게 무상보급(약 1,000부)

Ⅳ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 명확화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에 관한 표준모델(업무분장) 개발 및 활용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 표준모델 개발

- **중복 및 모호한 원·하수급자 안전책임, 권한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표준모델 작성 필요**
  -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표준모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부합되도록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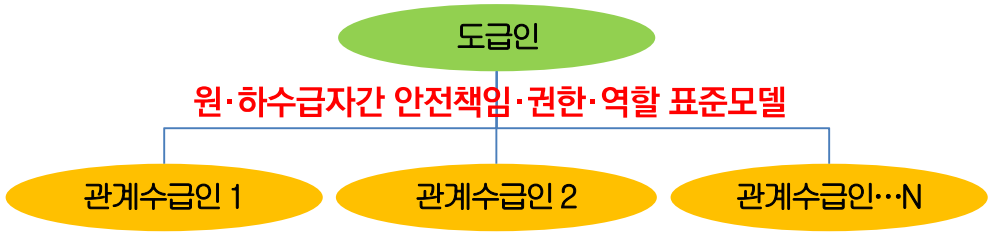

〈원·하수급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표준모델 예시〉

안전보건조치	실시자			비용부담자		
	공동	원수급자	하수급자	공동	원수급자	하수급자
안전행사		O		O		
안전점검/진단	O					
안전교육		O		O		
안전시설/위생시설			O		O	
개인보호구 지급			O			O

⋮ 원·하수급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에 관한 표준모델은 관련 법령에 적합

원·하수급자 안전책임/권한/역할 표준모델 활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 구성내용의 하나로 포함하여 원수급자 작성하고, 발주자(심사기관)가 검토**
  -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표준모델은 계획서의 특성에 따라 유해위험/공종별로 구분
  - 표준모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사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
- **발주자가 승인한 계획서에 포함된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와 요구사항은 하도급 입찰조건으로 활용**

〈원·하수급자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표준모델 활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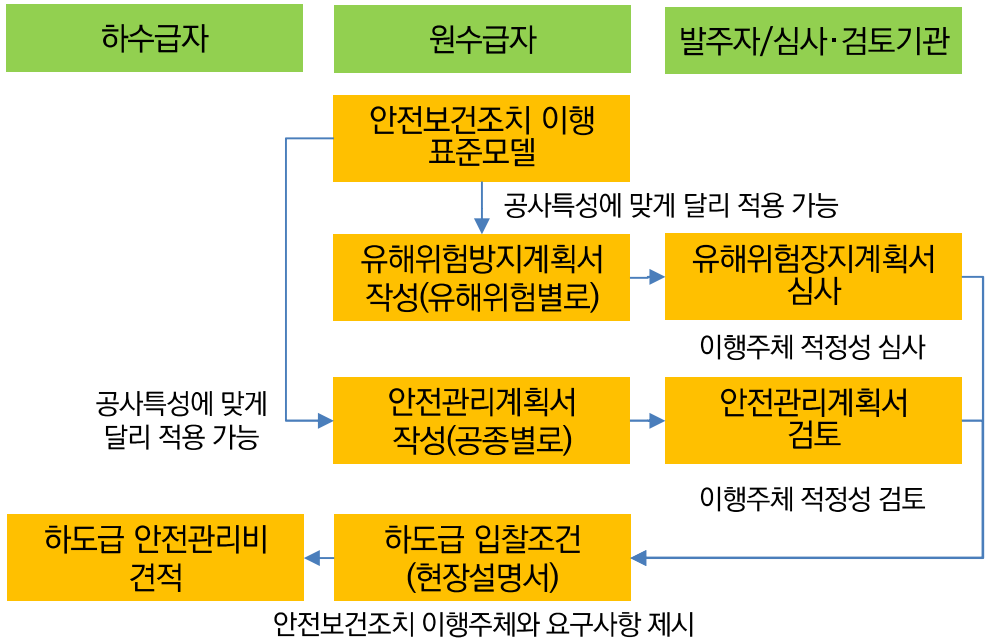

Ⅳ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 책임·권한·역할에 따른 비용의 합리적 분담

하수급자도 책임, 권한, 역할에 비례해 안전관리비 계상·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견적방식 개선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 개정안〉

〈현 행〉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의 안전책임, 권한, 역할에 비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수급자 산업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책임, 권한, 역할에 비례하여 산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0조 개정안〉

〈현 행〉

제20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개 정〉

제20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제시된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의 안전책임, 권한, 역할에 따라 책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에 따른 상향식 안전관리비 계상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도급 입찰 시 원수급자/하수급자간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구분에 따라 하수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충분한 견적기간 부여)하고 원수급자에게 제출
- 하수급자 견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도 검토하여 최종 승인

〈원하수급자간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구분(표준모델 활용/또는 해당 현장 특성 반영 가능〉

안전위생경비 비목			실시자		경비부담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접공사비	이동식크레인		○		○	
	비계		○		○	
안전비	감시연락	무전기(크레인 신호)	○		○	
	보호구류	보호헬멧		○		○
		안전띠		○		○
		안전구두		○		○

〈하도급 안전보건관리비 견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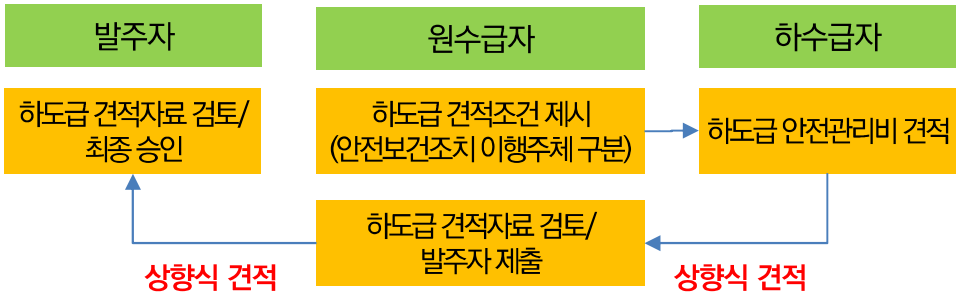

Ⅳ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 원수급자의 관리적·재정적 지원 확대

일부 대형건설사에 한정된 하수급자 안전관리 지원을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건설사로 확대

대형건설사의 하수급자 안전관리 지원사항

- **안전관리 우수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

- **안전관리비 50% 또는 100% 선지급**
  - 안전관리비의 50% 또는 10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에 협력사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부담없이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선 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미징구

- **법정 안전관리비 이외 추가 안전비용 지원**
  -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
  - 잔여매출이 100억원 이상 현장은 1억원, 잔여매출이 100억원 미만인 현장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
  -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사각지대(계약금액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있는 협력사에 대해 안전관리자 채용 시,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임금(매월 400만원)을 지원
  - 외부 전문가 안전컨설팅 비용 지원, 안전감시단·안전보조원 고용 인건비 지원

- **협력사 안전시스템 인정제도**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진단, 법규/기준에 부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형 원도급사로 확대

-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출연(출연자 세제혜택 및 입찰평가 반영)하고 이를 하도급사 안전관리 지원에 활용**

〈세제혜택〉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 인정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 법인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공제'

〈평가반영〉
- 동반성장지수 :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점수 부여
- 공공기관평가 : 「공공기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 실적」 평가 시 점수 부여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자금지원 중 '특별지원' 해당

Ⅳ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 하수급자 안전역량 향상

전문건설 안전혁신 센터 설치 등 협회, 조합 등 업계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하수급자 안전역량 제고 모색

하도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개발 및 보급

- 하도급 공사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자율안전관리활동 촉진
- 하수급자의 안전수준 진단
- 전문건설기업 대상 개별지도 및 안전 컨설팅
- 전문업종별 위험성 평가 매뉴얼 개발

하수급자 안전기술 혁신 지원

- 전문건설기업 안전기술 수요 조사
-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보유 안전기술 DB 구축
- 전문건설기업과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상호협력 지원
-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전문건설업 안전혁신 센터

안전혁신 아카데미 운영

- 안전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 전문건설사 대표, 핵심리더(현장소장, 직·반장) 대상 안전 교육 실시
- 모범사례 및 성과의 보급 및 확산
- 전문건설업 안전지수 개발 및 발표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 모범사례 및 성과의 보급 및 확산
- 전문건설업 안전지수 개발 및 발표
- 전문건설 안전혁신 박람회 개최

V 협력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추가 제언

건설현장 협력적 안전관리를 원·하수급자부터 시작해서 건설근로자까지 확대 필요

01 안전관리비 관점의 해결책은 근시안적 대책

- 직접공사비의 2%에 불과하는 안전관리비를 챙겨준다고 현장안전이 확보된다는 것은 큰 착각

02 안전사고 근본원인은 최저가 발주와 그 비용 전가의 악순환 고리

- 발주자의 최저가 발주, 원청사의 최저가 하도급자 선정과 부족한 비용의 하도급자 전가
- .원청사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용 안에서 부족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나누어 주고, 협력업체는 원청사가 제공한 비용과 작업여건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음

03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체제만이 재해예방 가능

- 협력업체의 안전한 공사수행 여건 제공에 대한 책임은 원청사가, 원청사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제공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지는 구조가 절실

04 공사비와 공기의 정상화를 통해 적격 수급인 선정이 근본적 대책

감 사 합 니 다